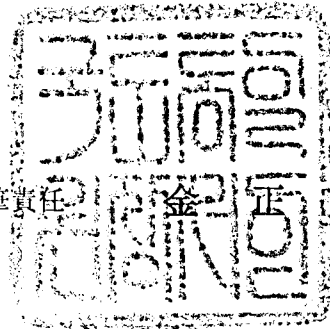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의 對南挑發

國際法上에서 본 北傀의 「聯邦制」案에 關한 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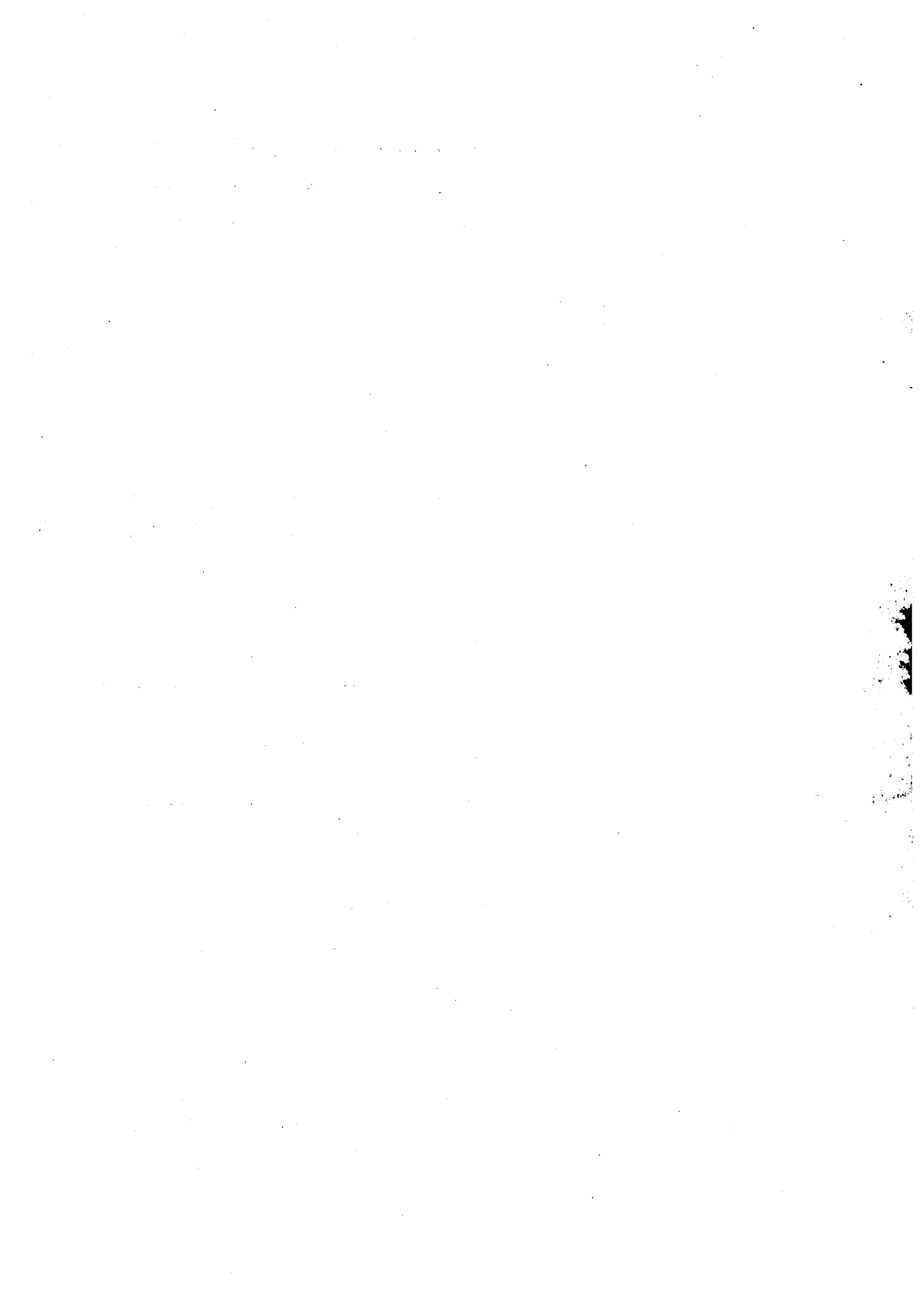


研究執筆責任 **金正均** (成均館大學校 法政大學)

刊行責任 **鄭大圭** (政策企劃室 補佐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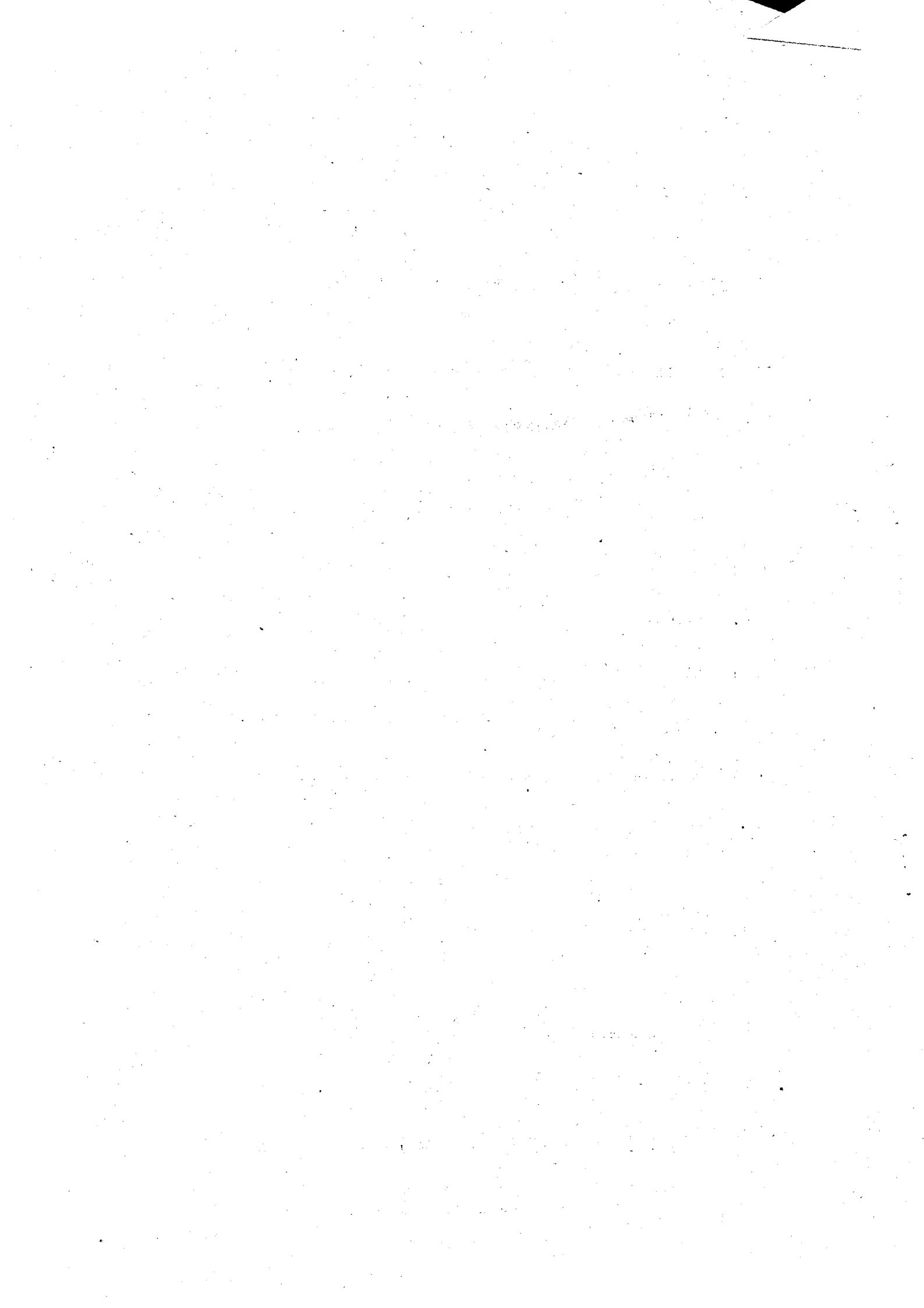
{ 북한연방제.
남북연방제안.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 | |
|--------------------------------|----|
| 一. 序 言 | 3 |
| 二. 南北聯邦制案과 分断体統合의 類型 (1 次比較) | 5 |
| 1. 南北聯邦制案 | 5 |
| (1) 政治的 企圖 | 6 |
| (2) 法律的 虛構 | 8 |
| 2. 分断体統合 모델 | 13 |
| (1) 獨逸의 境遇 | 14 |
| (2) 韓國의 境遇 | 19 |
| 三. 國際法上으로 본 國家統合의 類型 (2 次比較) | 23 |
| 1. 單一的統合 (併合 · 合併) 모델 | 24 |
| 2. 複合的統合 모델 | 26 |
| (1) 聯合 | 28 |
| (2) 聯邦 | 31 |
| (3) 特殊聯合 (英聯合) | 33 |
| (4) 特殊聯邦 (蘇聯邦) | 39 |
| 四. 南北聯邦制案에 대한 批判 (綜合比較) | 44 |



一. 序 言

가시鐵條網과 地雷밭 그리고 狙擊兵들이 連이어 있는 休戰線의 北方DMZ 에는 80個以上の 要塞化된 砲障地, 數10個의 蘇製 戰術 미사일, 蘇製MIG機를 包含한 600台의 空軍機, 1,200台의 蘇製 및 中共製탱크, 6,000基以上の 砲門들¹⁾이 즐이은 發進姿勢로 休戰線을 짓누르고 있다. 이는 어느 單一國內의 境界나 聯邦 또는 聯合內의 境界(國境)에서도 決코 볼수없는 殺伐한 戰鬪的 모습인 것이다.

「6.23宣言」을 비롯한 一聯의 平和定着方式을 全面的으로 外面하고, 모든 對話루트를 斷切한 北녘이, 「피바다」의 演劇으로 지새며 革命戰爭의 몸부림에 餘念이 없으면서도 그 險한 休戰線너머로는 「南北聯邦制」나 「單一口號下의 UN加入」이니 하는 先統一的인 偽裝平和攻勢의 애드벌룬을 떠워오고 있다. 統一이란 곧 解放이요 解放이란 곧 自己治下에 넣는 것을 意味해온 共產主義 戰略戰術의 속셈인지라²⁾ 그 어떤 軍事的인 態勢나 政治的인 攻勢에도 새삼스러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畢竟 共產的인 併合主義의 展開를 위한 또 하나의 計策임이 分明한 것이다.

本稿는 소위 南北聯邦制案이 一般的인 國家形態에 비추어 얼마나 奇異한 것인가를 보기 위해 本然의 單一國家대로가 아닌 國際法上의 統合體들(單一的統合 모델과 複合的統合모델) 그리고 오늘날의 分斷體統合모델들이 지니는 여러모습에 견주어 보았다. 論脈의 便宜를 위해 먼저 南北聯邦制案과 分斷體 統合類型을 比較하고 然後에 그들을 國際法上으로 본 國家統合類型에 再比較 하였다.

相互不可侵이나 相互平等등의 先平和的인 現實論을 끝내 無視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提論素材로 보아 結局 그것은 國際法上의 典型聯邦이나 典型聯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에 準한 統合國家의 形成論이나 節次論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다만 共產的統一모델만을 뿌리깊게 뜻하고 있는 것으로 把握이 된다. 聯邦論이나 聯合論이 併合論이나 合併論과 混論되기도 하고 併合論을 聯邦論으로 호러오기도 한 여러史例³⁾ 들이 새삼스럽다.

二. 南北聯邦制案과 分斷體統合의 類型 (1次比較)

1. 南北聯邦制案

소위 南北聯邦制案은 「 6. 23 宣言 」을 拒否하는 「 5大綱領 」의 對抗에서 새삼 檢出되어 나온 것이다. 「 6. 23 宣言 」이 緊張緩和와 國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南北이 國際機構에 함께 参与함을 反對치 아니하고, UN 多數會員國의 뜻이라면 그리고 또한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前提下에 南北의 同時 UN 加入도 마다하지 않겠노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에 맞선 「 5大綱領 」은 「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와 緊張狀態의 緩和 」 「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의 實現 」 「 各界各層人民들과 政黨 社會團體代表들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召集 」 「 現存制度의 當分間 유지와 南北聯邦制의 實現 」 「 單一口號인 高麗聯邦共和國으로의 UN 加入 」등을 내세웠다. 「 6. 23 宣言 」이 平和定着을 主眼目으로 하는 「 過渡的過程 」으로서의 南北關係를 留意한 것인데 비해 「 5大綱領 」은 平和定着의 方式을 拒否하고 實現性없는 「 大民族會議 」에 의한 操作的統一을 強辯한 것이다. 또한 「 6. 23 宣言 」이 「 平和的統一을 위한 外交政策 」을 闡명한 것인데 비해 「 5大綱領 」은 軍事問題解決을 앞세운 「 內外戰

略적인 붉은 造言」이었다. 새삼提起된 南北聯邦制案은 「6.23 宣言」에 提示한 南北同時UN加入論에 對抗하는 要件으로 設定된 것이지만 「5大綱領」이 담은 共產的底意(多意)는 南北聯邦制案의 國際法的無意味에서 더욱 두드러진다는 點을 指摘치 않을 수 없다.

(1) 政治的 (合作的·協商的) 企圖

4.19直後の 政治的 混亂期에 내세운 「外勢干涉 없는 南北總選, 總選이 不如意면 過渡的措置로서의 南北聯邦制實施, 그 모든것이 不如意면 南北産業界代表로 되는 經濟委員會構成」(1960年 8月 15日 金日成 演說)⁴⁾ 程度로 시작되었던 大同小異한 常套的인 平和的攻勢를 越南戰様相의 變化와 國際的인 和解무드, 그리고 南北對話를 前後한 事勢의 變轉에 따라 걸 맞추어 낸것이 金日成의 「5大綱領」이고, 許淡의 「7項目」이고 金一의 「5項目」인 것이다.

「5大綱領」에서만 보아도 共產式底意를 담은 政治的多意를 말해주는 붉은 事例는 數없이 많다. 這間 主唱해 온 「最高 民族委員會」를 「高麗聯邦共和國」이란 單一國號下의 「大民族會議」로 바꿔 놓았고, 聯邦制나 經濟委員會의 設置를 扞一的인 前提條件으로 했던 것을 軍事問題解決優先下의 聯邦制로 굳혀 놓았고, 南北政府當局이 任命하는

같은 數의 代表로 한다면 最高機構의 構成을 數不明의 各界各層人民들과 政黨·社會團體代表들이라는 非任命的인 것으로 넓혀 흐려 놓았고 南北이 個別로 活動하되 經濟 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케 한다던 이른바 聯邦的役割도 政治·經濟·軍事·文化的 모든 分野에 걸친 合作的인 努力으로 하되 對外的으로는 이른바 聯邦共和國的인 單一的 共同步調이어야 하는 것으로 묶어 놓았다.

그리고 그것이 「긴급하게 제기되는 問題의 解決을 위한 과도적 對策」이고 「일련의 中間거름」⁵⁾ 이라고 해오던 것을 「취향한 進로를 밝혀준 전투적 기치」⁶⁾ 「北과 南사이의 온갖 장벽을 무너뜨리고 끊어진 民族의 유대를 회복하여 南北이 힘을 합쳐가는」⁷⁾ 「위대한 주체사상을 조국통일분야에 구현한 독창적 방안」⁸⁾으로 強調하기에 이른 것이면서도, 結局 그 內容은 「南北間의 互相協調와 교류」⁹⁾ 「南北사이의 보다 広範한 접촉과 래왕..... 經濟文化交流의 더욱 원만한 實現..... 南北이 經濟的으로 合作하고 交流하며.....」¹⁰⁾ 「각 方面적이고 全面的인 合作」¹¹⁾ 「北과 南의 關係와 合作.....北과 南의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와 互相理解와 協助.....」¹²⁾ 라는 式의 虛色形容으로 一貫하고 있다. 48年의 南北連席會議가 術策的으로 惡用된 以後 한 世代에 걸쳐 數없

이 되꾸리 해온 合作戰略 協商戰略의 한 모습임이 分明한 것이다.

(2) 法律的 虛構

소위 「5大綱領」의 末項이 「高麗聯邦共和國」이라는 單一國
號에 의해 UN에 加入하자고 한것은 얼핏 보면 UN加入問題에 있
어서의 國家形態를 實定的으로 提論한 것 같지만 其實은 現段階에
서의 UN加入을 拒否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그綱領 5個項의 逆順으로 더듬어지는 질은 政治的色彩에 비해 國
家形態로서의 聯邦의理念이나 構成形式 즉 그 國際法的意味나 內容
에 관해서는 전혀 明示된 바가 없기 때문이다.

北韓式인 聯邦制의 定義를 빌려 보아도 「나라의 全地域에 걸쳐
國家主權을 行使하는 最高主權機關과 그의 최고 집행기관이 있으면
서 해당하는 地域에서 一定한 범위의 主權을 獨自적으로 行使하고
집행하는 成원國으로 이루어진 國家이고, 聯邦的인 最高主權機關과
最高執行機關은 全聯邦的領域에 대하여 最高主權을 行使하며 行政的
統制를 實施하고……, 聯邦憲法을 비롯하여 聯邦最高主權機關의 法令
聯邦最高執行機關의 決定 지시는 聯邦全地域에서 最高의 法的効力を
가지며 執行의 絕對的인 義務性을 띤다.」¹³⁾ 고 하였는데 그토록
強力한 聯邦憲法, 聯邦最高主權機關, 聯邦最高執行機關, 聯邦司法機關,

聯邦立法機關등의 根本問題에 關한 構想이나 憲法的 接近形式 등에 관해서는 一言半句의 言及도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그 實相에 관하여서는 意圖的으로 回避的이다.

또한 北韓式인 定義가 그리 하듯 「社會主義國家에서 聯邦制는 民族問題解決의 重要한 手段의 하나로서 民族自決權의 原則에 基礎하여 每個民族의 自主的인 發展을 保障하고……, 民主主義 中央執權制 原則에서 聯邦的인 最高主權機關에 복중」하나 「資本主義 國家들의 聯邦制는 形式上 成員國들의 一定한 主權을 인정하지만……, 國內外的인 모든 問題를 官僚主義的 中央執權制에 基礎한 聯邦的인 主權機關이 單獨으로 處理하는 單一化된 聯邦制에 불과하여 強大國 브르쥬아지가 弱小民族들에 對한 抑壓과 掠奪을 保障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¹⁴⁾ 면 그토록 甚한 定義差를 넘어서 南北을 모아 하루아침에 聯邦的統一을 이루자는 5大綱領이 뜻하는 聯邦의 基本的法理란 어떤것인지 크게 疑問이 가나 이에 一切 解明이 없다. 基礎的法理에서 「民族問題解決의 重要한 手段」이라면서도 그 定義上의 것과 같은 「民族」의 意義나 聯邦制形態를 保障해 줄 聯邦的인 理念的基礎에 관해서도 아무런 明示가 없고 다만 앞서 본바와 같이 「合作」, 「交流」, 「關係」, 「接觸」, 「來往」등만을

始終 重言復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北韓式인 聯合制의 定義를 보면, 「一定한 目的 밑에 이루어진 國家聯合은 聯邦制國家와는 다르다. 國家聯合은 國家들간의 條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종의 동맹이다. 여기에는 主權을 代表하는 最高主權機關이란 없고 每箇聯合成員國自体가 自己主權을 行使한다.」¹⁵⁾ 고 했으나 또 다른 聯邦制內容의 用語的解釋을 보면

「2個以上の 獨立國家聯合의 單一主權國家 또는 一定한 目的을 가지고 하나의 機關을 通하여 이루어진 國家聯合」¹⁶⁾ 이란것도 있는데이므로 聯邦的憲法이나 聯合的條約의 區別, 聯合的聯邦이나 聯邦的聯合의 差異등 錯雜한 課題마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 너더욱이 그 基本的立場은 分明해야 할 것이어늘 그 概念自体는 매우 不透明하고 애매 모호하기 그지 없는 모습이다.

名稱이 聯邦이든 聯合이든, 그리고 그 形態가 一般的이든 特殊的이든간에 적어도 複合體의 國家形態를 이루려는 것이면, 그것이 永久的인 것이든 一時的인 것이든간에 「構成體相互性」을 위한 基本的이고도 段階的인 努力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相互性을 段階的으로 다지려는 平和定着的提議에는 전혀 關心을 두지 않고 如前히 東問西答格인 것이다. 後述하듯 聯合이나 聯邦은 반드시 隣

成体間的 相互性」을 土台로 하는 것이고 其中에서도 境界(國境) 線의 不可侵, 領土保全과 主權尊重, 武力威脅 및 武力使用의 禁止等 을 大前提로 하고, 國際法上의 承認에 該當되지 않는 平等한 兩立關係를 이루도록 相互調節해 나가야 하는 것이어늘 南北聯邦 制案에서는 이런 基準的事項에 대해서 조차 아무런 保障이 없다. 軍事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바꾸는 일은 美國과 해야 할 政治的 作業이고 ¹⁷⁾ 單一國號의 高麗聯邦共和國은 協商 合作을 通해 이룩해 야할 人民的 作業이라는 것이어서, 그들의 條約論이나 國家形態論이 란 法的提論은 虛構一色일 따름이다.

크게 말해 같은 分斷國인 獨逸의 境遇를 들어 複合體모델을 들 려면 眞心으로 總括的哲學이 담긴 統合形式인 것으로 말 해야 될 것이나 北韓의 構想과 實態는 決코 獨逸的인 것 과도 반드 시 같지 아니하고, 또 같을 수도 없음은 뒤에 對比表에서 보는 바와 같다. ¹⁸⁾ 獨逸에서의 論議는 「獨逸的인 總括性」을 留意해 내기 위한 獨逸的 課題로서의 여러 努力인데 比해 ¹⁹⁾ 이른바 南北 聯邦制案은 全韓半島의 赤化統一을 이룩해 내기 위한 共產的課題의 一貫된 모습인 것이다.

分斷體의 法的地位를 論하는데 있어서도 北韓이 보인 基本性은

法統的繼續性(歷史的正統性)을 正面으로 拒否하고 있고 領域的統一性은 반듯이 共產的이어야 한다는 式으로 現實否定的인 것이나 그 國家的單一性은 共產的 單一體이어야만 하겠는데 그것을 于先(또는 畢竟)聯邦的인 것이라고 하려는 듯 싶다. 分斷體에 있어서도 固定된 實體認識에 머물러 있지 않은 北韓이 聯邦體에 있어서도 相互體의 하나로 定着하려는 것이 아님이 分명한 限 그것은 國家成立論上의 法的要件을 혼드는 것이어서 國家形態論에 있어 共產主義와 無政府主義에 따른 國家에 대해 批判的이었던 하이드(C. C. Hyde)나 리비엘(A. Rivier)의 主張을 聯想케 할 뿐이다.²⁰⁾ UN에의 加入이 單一國號인 高麗聯邦共和國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赤化後에 單一的共產國으로 加入한 越盟이나 代表權을 차지하고 앞은 中共의 例를 마음먹은 것이지 決코 同時加入한 分斷獨逸의 例나 其他의 一般的인 複合(聯邦·聯合)事例를 본뜨려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 明白한 것이다.

分斷國이 들로 나뉘어 UN에 二議席을 차지하기도 하고²¹⁾ 聯邦聯合같은 複合모델이 複數議席을 갖기도 하는 例(後述)²²⁾에 비추어 보면 韓國統一問題를 30年이나 다루어 오고도 이를 못다한 UN에 하루아침에 單一國號로만 加入하자는 것도 無理이고, 그러면

서도 專門機構에는 애써 二国的으로 加入하여 大韓民國에 맞서려는 것도 非理인 것이다.

또한 작게 말해서 聯邦, 聯盟, 聯合, 同盟, 統合등과 같은 複合體語를 모두 同義視하는 Journalistic 한 用例²³⁾에 따른 用語戲弄的인 것이라면 이 역시 後述하듯 聯邦的으로 偽裝된 또 하나의 赤化統一的인 戰略戰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分斷體統合의 類型

「分斷·分斷國」이란 말은 「特有한 範疇」(sui generis category)에 屬하는 對決인 冷戰²⁴⁾의 所産이므로 이를 태면 冷戰的 用語라고 볼수가 있다. 따라서 그것은 國際法上的 國家繼承事由인 分割·分讓이나 分裂·分離와는 다르다는 意味에서 統一的統合을 前提로한 저마다의 分斷體法的地位論이나 統合時에 있어서의 法統을 留意한「單獨代表權」(Alleinvertretungspolitik.)

으로

線에 머물러 있고 法理論이라는 것도 企圖秘匿속의 創設法的論議이
기 일수여서 後述하게 될 國家統合의 諸類型만큼 經驗的 實証的인
것은 못된다.

(1) 獨逸의 境遇

当初 東西兩獨은 모두 終戰時의 無條件降服이 獨逸의 征服
(debellatio)의 消滅²⁵⁾을 의미한다는 說論을 強力히 拒否하
고 舊獨逸帝國의 (또는全獨的) 紐帶를 깊이 留念하는 部分秩序論
(Teilordnungstheorie)에 뜻을 두어 「地方的인 事實上的 政
府 (local de facto Govt.)를 세운다고 했었다.²⁶⁾ 그러나 分斷
의 長期化와 膠着, 理念的對立의 激化, 事實上政府의 權限의 競爭的
擴大 등으로 해서 未來的인 統一의 統合의 類型觀에 관한 東西獨見
解의 本質的인 差異가 各其 다른 地位論으로 다듬어져 나왔다.

同一性論 (Identitätstheorie)이 西獨의 것이었고, 二國論 (Zw-
eistaatstheorie)이 東獨의 것이었다. 同一性論은 舊獨逸帝國

으로 認定

論争으로 풀이 되어 있다. 그러나 長期分断
해서 그論議나 実態에도 많은 變化가 오기는 했으나 그러한
「分断·分断国」의 統合類型에 관한 想念例를 独逸과 韓國의 境遇
에 比較해 보기로 한다.

勿論 統合의 類型論議라는 것도 尙今 基本關係나 말하는 原則적인

과의 同一性을 前提로 해서 独逸의 法的統一性을 肯定的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 立場을 가장 簡潔하게 說論한 같은 系列의 核

心国家論 (Kernstaatsstheorie) 에 의하면 西獨이 全獨의 中核的存

存이고 西獨政府만이 唯一한 法的政府로써 全獨을 代表할 資格이 있

으며 全獨의 한 構成部分인 따름인 東獨地域도 當然히 西獨基本法의 適用範圍內에 있는 것이므로 그곳에는 形便上 實效的支配力이 미치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自由로운 全獨選舉에 의한 統一을 希支하는 이 立場은 많은 東獨民의 西獨移住나 東獨內에서의 繼統的인 抵抗運動 등도 西獨의 正統的信任을 뒷받치는 것이라고 主張했으나 長期分斷이란 事實앞에서의 法的試鍊은 매우 큰 것이었다.

二國論은 新政府樹立의 現實로 해서 全體的인 法的統一體는 解體되었고 平等한 立場에서 共存하는 두개의 主權國이 分裂的으로 생긴것이므로 結局 統獨問題는 兩獨議會代表로 되는 全獨委員會를 두어 다루게 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²⁷⁾ 東獨의 二國論은 率直히 分裂的의性格을 是認한 것이었으나 이에 대해 西方側은 東獨·東歐의 蘇聯에의 併合을 優慮한다하였고 同一性論은 毅然하게 非分立的인 獨逸의 存統을 主張한 것이었으나 共產側은 이를 論理的으로 나 現實的으로 虛構的인 것이라고 非難하였다.

以上과 같은 獨逸的인 兩論對立은 이른바 東方政策 (Ostpolitik) 을 고비로 한 新局面에 對해 西獨이 聯合國家的 部分國家論 (Teilstaats-theorie) 을 내세우자 東獨의 見解도 國家聯合的 修正 二國論 (Revidierte Zweistaats-theorie) 으로 調整되게 되었다. 絶對로 分割·分裂같은 分立體가 아니라던 西獨主張이 分裂現實을

認定하고 分立된 別個의 것이라던 東獨主張이 비록 分裂이로되 다
시 聯合체를 志向해 가는 것이라는 變貌를 보인 것이다. 그리하
여 東西兩獨이 서로 「境界不可侵」 「武力不使用」을 約束하여 各
其 「對內統治權」을 尊重키로 하고 東西獨間의 論議나 協約을 統
獨時까지로 制限한다고 한 것은 그들이 法關係에 있어 對立的이고
分裂的이면서도 또한 法的으로나 事實的으로 調整的인 努力의 一面
을 보인 커다란 進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西獨이 兩獨
關係를 國內法的特殊關係로 보며 全獨의 共榮體를 志向코져 한데 比
해 東獨은 兩獨關係를 國際法的平等關係로 보고 獨逸的인 聯合體를
企圖해야 된다는 差異를 보였었다. 西獨이 聯合國이나 特殊聯合의
類型에 따라 全獨的인 國民的統一性을 企圖하고, 東獨이 國家聯合的
인 類型에 따른 全獨的結集을 構想한다 하기에 이른것은 모두 當
場에는 國家的單一性을 拋棄하고 過程으로서의 複合的類型을 留意해
보려는 뜻의 表現인 것이다. 그러나 西獨이 聯合國的(聯邦)이
어도 中共集權的인 機關을 두지 않은 채 相互交流를 保求한다하고
東獨이 國家聯合的이어도 常設的機關을 두지 않는 民族體²⁸⁾를 追
求한다 한것을 보면 國際法的典型的 複合體나 서둘러 期待하는 것
이 아닌 單一에의 期待可能性을 위한 꾸준하고도 심중한 獨逸的

서도 專門機構에는 ैसे 二国的으로 加入하여 大韓民國에 맞서려는 것도 非理인 것이다.

또한 작게 말해서 聯邦, 聯盟, 聯合, 同盟, 統合등과 같은 複合體語를 모두 同義視하는 Journalistic 한 用例²³⁾에 따른 用語戲弄的인 것이라면 이 역시 後述하듯 聯邦的으로 偽裝된 또 하나의 赤化統一的인 戰略戰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分斷體統合의 類型

「分斷·分斷國」이란 말은 「特有한 範疇」(sui generis category)에 屬하는 對決인 冷戰²⁴⁾의 所産이므로 이를 태면 冷戰的 用語라고 볼수가 있다. 따라서 그것은 國際法上的 國家繼承事由인 分割·分讓이나 分裂·分離와는 다르다는 意味에서 統一的統合을 前提로한 저마다의 分斷體法的地位論이나 統合時에 있어서의 法統을 留意한 「單獨代表權」(Alleinvertretungspolitik.) 論등으로 풀이 되어오기도 했다. 그러나 長期分斷으로 해서 그論議나 實態에도 많은 變化가 오기는 했으나 그러한 「分斷·分斷國」의 統合類型에 관한 想念例를 獨逸과 韓國의 境遇에 比較해 보기로 한다.

勿論 統合의 類型論議라는 것도 尙尙 基本關係나 말하는 原則的인

線에 머물러 있고 法理論이라는 것도 企圖秘匿주의 創設法的論議이
기 일수여서 後述하게 될 國家統合의 諸類型만큼 經驗的 實証的인
것은 못된다.

(1) 獨逸의 境遇

当初 東西兩獨은 모두 終戰時의 無條件降服이 獨逸의 征服
(debellatio)의 消滅²⁵⁾을 의미한다는 說論을 強力히 拒否하
고 舊獨逸帝國的 (또는全獨的) 紐帶를 깊이 留念하는 部分秩序論
(Teilordnungstheorie)에 뜻을 두어 「地方的인 事實上的 政
府(local de facto Govt.)를 세운다고 했었다.²⁶⁾ 그러나 分斷
의 長期化와 膠着, 理念的對立의 激化, 事實上政府의 權限의 競爭的
擴大 등으로 해서 未來의 統一의 統合의 類型觀에 관한 東西獨見
解의 本質的인 差異가 各共 다른 地位論으로 다듬어져 나왔다.

同一性論(Identitätstheorie)이 西獨의 것이었고, 二國論(Zw-
eistaatstheorie)이 東獨의 것이었다. 同一性論은 舊獨逸帝國
의 同一性을 前提로 해서 獨逸의 法的統一性을 肯定的으로 認定
하려는 것으로 이 立場을 가장 簡潔하게 說論한 같은 系列의 核
心國家論(Kernstaatstheorie)에 의하면 西獨이 全獨의 中核的存
存이고 西獨政府만이 唯一한 法的政府로써 全獨을 代表할 資格이 있

몹시 부림이 갖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중계 外形만 본다면 四国分割占領을 兩斷으로 이끌고, 그 兩斷을 將次 다시 割만 (German) 的인 하나의 感覺으로 이르려는 各 分斷體들은 그들을 「獨逸内の 國家」(State in Germany) 나 「獨逸의 兩部分」(two parts of Germany) 이니도 하고 全獨體를 「未發動의 冬眠狀態에 있는 하나의 獨逸」이라는 假說에 따른 獨逸聯邦 (a Confederation of Germany, a German Confederation)²⁹⁾ 이니 聯合制 (staatenbündisches system, confederal system) 나 하는 것으로 想念해 보기도 한다. 그 外部形態를 「하나의 獨特한 類型의 國家聯合」(an association of states sui-generis) 인 英聯合에 까지 견주기도 하는가 하면 그 內部關係를 國家間的 特殊關係 (Special inter-state Relationship) 로 보되 「그들 自身만의 關係」(inter se relation) 라 하여 「內獨關係」(intra-German) 로 概念하려 그나름으로 애쓰고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嚴密하게 內容을 본다면 서로의 立場에서 共存키를 다져 「境界不可侵」 「武力不使用」 「自決權尊重」등을 確約한 然後에야 基本條約에서 平等原則에 立脚한 善隣友邦關係 (第 1 條), 獨自性과 自決權 그리고 UN 의 目的과 原則등에 따른 雙

方關係(第2條), 紛爭의 平和的인 處理(第3條), 國際的인 代表權의 分離(第4條), 相互平和關係의 增進과 安保 및 協力에의 貢獻(第5條), 常設代表部交換(第8條), 實際的이고 人道的인 事項의 調節(第7條), 經濟·科學·技術·交通·法律·通信·保健·文化·體育·環境保護(第7條) 등의 關係를 設定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와는 別途로 未來的인 統合類型을 그들 나름으로 제각기 複合的으로 想定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로 보아 兩獨의 構想이 決코 當場에 單一國(Einheitsstaat)을 實現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當場에 어느 傳統的인 複合的인 統合의 類型에 맞추어 내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將來에 있을 統一的인 統合에 對備해서 複合的인 國家類型을 想定하되 單一國家性이 強한 모델보다는 構成體相互性에 注力하는 複合型이 짐작되고 있다는 것일 따름인 것이다. 具體的으로 그리고 最終的으로 獨逸的인 特殊狀況이 어떤 것이고 그것에의 適應이 어떤 것일지는 아직 未知數이나 單一化作業의 過程으로 留意된 複合化라는 것도 複合體 그 自體의 總括類型보다는 合成體속에서의 構成體의 「獨自性」과 「相互性」이 더 注目되고 있는 形便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數百年에 걸쳐 355個나 38個의 群邦으로 나뉘어 지

내은 分裂的 共存經驗이 民族構成이나 民族性이나 또는 다른 側面의 特性과 함께 統一形態의 論議에 餘裕를 주고 있는듯 싶은 點이 獨逸的인 特色이라면 特色일 것이다. 그들은 앞날의 單一性의 焦點을 위해 오늘의 「相互性」의 마당을 多樣하게 이루어가는 精神과 科學의 調整作業에 臨해 있는듯 싶다.

(2) 韓國의 境遇

分裂的이면서도 兩立的인 獨逸과는 달리 처음부터 絶對的인 否定的對立으로 시작된 韓國의 分斷³⁰⁾은 38線劃定과 美·蘇의 分割占領, 信託統治의 劃策, 美·蘇共委의 決裂, 美·英·中·蘇會談의 流產, 韓國問題의 UN移管, 唯一合法政府로서의 大韓民國의 樹立, 6·25動亂, 休戰線 設定, 제네바會談의 坐礁들을 거치면서 極限的 鬪爭의 樣相이 持續되었다. 韓國에서 提起된 主張의 첫 對立은 初期로부터 계속된 大韓民國側의 合法性論(Legalitätstheorie)과 北韓側의 소위 對等說(Äquivalenztheorie)의 解放論(公論된 學論이 아닌 主張인 것이나 여기서는 別表의 便宜上 이렇게 부른다)이었다.

合法性論은 大韓民國이 連綿히 이어온 歷史的 正統성과 UN이 大韓民國政府를 唯一合法的인 것으로 承認하는데 있어 보여준 共同

的이고도 明示的인 決議에 따라 法統을 다지려는 立場이고 소위 對等說의 解放論은 正統的인 大韓民國을 뒤쫓기 위해 提起된 北韓側의 戰略戰術 즉 共產圈으로 부터의 承認을 넓혀가며 UN에의 同時招請과 同時加入등을 追擊的으로 提起하는 一方, 이른바 解放鬭爭的인 戰略戰術을 現地에서 敢行한 一連의 繼續的인 共產化政策의 立場인 것이다.

北韓이 1954年 제네바會議에서 「外軍撤収」와 「南北議會代表로 되는 全朝鮮委員의 構成 및 同委員會主管下의 選舉」를 내세우고³¹⁾ 1960年 「外勢干涉 없는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의 南北總選」「南北韓의 聯邦制」「南北政府代表로 되는 最高民族委員會의 構成」등을 主張한 것들은 「UN監視下의 南北總選」이란 大韓民國의 一貫된 施策을 回避하기 위한 術策이었다.

이른바 Hallstein的인 競爭이 끝을 맺으면서 60年代後半에 이르러 大韓民國이 溫和한 正統性論(Legitimitätstheorie)을 내세운데 反해 北韓側은 더욱 戰鬪的인 革命戰略論(Theorie der Revolutionsstrategie) (別紙의 便宜上 이렇게 부른다.)을 펴냈다. 正統性論의 大韓民國이 內的 經濟發展에 힘쓰는 한편 크게 平和外交를 넓히고, 唯一合法을 일삼아 크게 내세우지 아니하며 對內會談의 實現을 主導하여 마침내 7.4 共同聲明, 6.23 平和統一外交

宣言, 1. 18 相互不可侵協定締結提議 등을 낸것은 「全韓국의 法的存
統」과 「民族的團結」「南北間特別關係의 設定」등을 깊이 留意해서
한 過渡的 事勢進展策이요 適正線의 論調로 된 統合要因의 予備的인
造成作業이 있다. 그러나 革命戰略論을 내세운 北韓은 現地的 對
話를 미루면서 「社會主義建設을 土臺로 한 北韓에서의 革命力量強
化」「南韓內의 革命勢力育成을 통한 南韓에서의 強力한 革命力量
確保」「社會主義反帝國主義勢力과의 連帶에 의한 國際革命力量의
強化」등의 이른바 3大 革命路線을 내세워³²⁾ 國內外에서의 一聯의
對決的 姿勢를 鞏固히 하는 한편 「5大綱領」이니 平和協定이니 하
는 平和攻勢를 兼行해 냈다. 모든 共產的企圖 따라서 3大革命路
線도 「5大綱領」이나 平和協定도 그 모든것이 오늘의 革命戰略論
의 內容 바로 그것인 것이다. 「5大綱領」속의 單一口號니 聯邦
制니 하는것도 正統的인 나라이름 (nation building)에 관한 것
이 아니라 그러한 計策의 一貌인 따름인 것이다.

그것은 共產的併合型, 合作的平定型, 聯邦的統合型등을 網羅해서 이
루려는 共產式인 併合主義 (annexationism) 下의 單一的 統一을
促成하려는데 깊은 聯関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大韓民國이나 西
獨 그리고 東獨이 내세우고 理解하려는 原則論이나 基本關係論은
勿論이고, 自由民主의 論理나 國家形成의 法理에도 맞지 않는 것이

며 다만 「共産的 併合的 歸結」의 先例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이다. 그것은 決코 「聯邦的인 水準에서」(auf Bundesebene) 「相互性」을 誠實히 다져가려는 것이 아니라 失敗한 國共合作, 成功한 越南併合, 奧妙한 獨逸的聯合 또는 聯邦 그리고 一般的인 複合的 國家類型의 多樣한 錯綜例들을 吟味한 나머지의 技巧的인 오늘의 戰略이요 戰術인 것이다.

正統性에 뜻두어 平和的인 單一的統一을 期하되 우선 조심스레 相互的인 調節過程을 留意해 보려는 것이 大韓民國主張인데 비해, 이른바 人民的次元에서 聯合的次元³³⁾에 이르기 까지를 모두 共産的 單一的統一의 持續的인 革命過程으로 보려는 것이 北韓의 立場인 것이다.

三. 國際法上으로 본 國家結合의 諸類型 (2 次比較)

分斷 (division) 이 國際法上의 分割 (dismemberment) · 分裂 (disunion) 과는 다른 것이듯이³⁴⁾ 分斷의 統一도 國際法上의 다른 單一的統合 (新生) 이나 複合的統合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오랜 分斷實態와 그것의 統一構想들은 結局 國際法上의 여러 國家 統合모델을 拳論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여기서는 前述한바 南北聯邦制案이나 分斷體統一論에 다시 견주어질 國際法上의 單一的 또는 複合的인 國家結合모델이 지니는 國家形態의 性格을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單一的統合모델에서는 併合과 合併을 單一化된 最終主體의 側面에서 보아 單一的統合의 一元的 모델로 理解하였다. (複合的統一모델에도 合併的인것이 있으나 여기서는 單一的統合만을 合併으로 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이들을 分斷體의 統一에 있어 優位에 있는 어느 一方이 他方을 強要壓倒 (武力征服包含) 하거나 同位的인 兩分體가 理想的인 單一化合意에 따라 分斷을 止陽하는 境遇와의 比較를 위한 모델로 假想해 보기로 하였다.

다음 「複合的統合모델」에서는 都是 複合國家 (composite state)

란 2個以上の 主權國이 結合해서 1個의 國際的 人格을 形成하되
複合文書와 複合에 參加한 主權國의 主權保有程度에 따라 그 性格
이 定해지는 것이므로 이것이 單一國家의 主權擴大的 發展段階나
또는 보다 큰 單一의 國家를 이루어가는 便宜的過程에서 이루어지는
「平等權에 立脚한 複合的政治組織」이라는 點에서 分斷體統一論의 그
런 類似傾向의 吟味를 위한 假想모델로 하였다.

1. 單一의 統合 (併合·合併) 모델

「併合」(annexation, Annexion)이란 一國이 他國을 自國의
一部로 吸收하여 보다 커지는 것이고, 「合併」(amalgamation,
Staatenunion)이란 2個以上の 國家가 結合하여 보다 큰 單位
의 새로운 單一國을 이루는 것이다. 既存의 複數人格이 單一法人
格으로 變하는데 있어서는 併合과 合併이 같으나 前者는 優勢者에
의한 劣勢者의 吸收요 後者는 參與國들의 對等한 統合을 통한 法
的地位의 變更인 것이다. 併合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國家나 合併
前 舊國의 政治的權利義務는 併合·合併과 同時에 失効하나 地方的
및 行政的인 것과 財産的인 權利義務는 併合國이나 合併新國으로
繼承된다.

併合에는 1901년에 英國이 行한 南阿共英和國과 오렌지 自由國의 併合³⁵⁾ 이나 1939년에 이탈리아가 行한 이디오피아併合³⁶⁾ 처럼 強制的征服으로 되는 境遇와, 1910년에 行하여진 日本의 韓國併合³⁷⁾ 이나 1908년에 行하여진 벨기에의 콩고 自由國併合³⁸⁾ 처럼 假飾的合意로 되는 境遇의 두 패턴이었다. 武力征服과 假飾的合意의 法効에 대해서는 많은 論議가 있으나 最終的領土權을 掌握한 것이 事實이면 이를 認定치 않을수 없는 것이 國際社會의 現實이다.³⁹⁾

合併은 어떤 永久的인 共通目的에 뜻을 모아 合意形式으로 主權을 共同으로 行使하게 되는 것이다. (統合되는 政治共同體들의 事情에 따라 즉각 新生單一體를 이루는 때도 있고, 單一體를 志向해가는 過程으로 複合體를 이루는 例도 있고, 또 境遇에 따라서는 永久的으로 合成的 複合體인체로 國家形態를 이어가는 例도 있다.) 併合과 合併의 比較에서 侵略的인 併合을 平和的인 合併 또는 聯邦으로 假裝하거나⁴⁰⁾ 未完成的 共同體를 大成的 合併體로 誇張하는 등의 政治的強辯이 法律關係를 어지럽히는 例도 있고, 境遇에 따라서는 보기나름으로 併合으로도 보이고 合併으로도 보이는 이탈리아 統一같은 妙例도 있다.⁴¹⁾ 그러나 併合의 意思가 없는 武力行使⁴²⁾

나 併合意思가 있어도 征服이 未完成이거나 또는 安定性・確定性이 없는 離合集散은 國家繼承으로서의 併합이나 合併과는 無關한 것이다.

이처럼 併합이나 合併은 그 內容을 달리하는 것이나 그 單一國家性은 外形上 같은 記号로 表記될 수 밖에 없다. ⁴³⁾ 그러나 그 構成過程에서 併합이 武力을 使用하는 것이고 國內法關係를 維持하되 併합이 併合國國內法을 強要한 것인데 비해 合併에서는 武力行使가 없고 또한 法關係도 新生統合體의 新國法이라는 點은 다르다.

2. 複合的統合 (聯合・聯邦・特殊聯合・特殊聯邦)

國家에는 원래의 한 國家가 1個의 中央政府만을 가지고 單一的인 意思를 行使하는 경우와 2個以上の 主權國이 全的으로 또는 大部分이 結合해서 1個의 國際的 人格을 形成하되, 複合文書와 複合에 참가한 各國의 主權保有程度에 따라 그 性格이 정해지는 合成形態의 1個政府를 가지고 一國으로 行動하는 경우의 兩者가 있다. 前者를 單一國家 (Unitary State), 後者를 複合國家 (Composite State) 라고 하는데, 主權國이 單一國일 수도 있고 複合國家일 수도 있는가 하면, 單一國에는 主權國도 있고 半主權國도 있는

것이다.

複合國家의 構成國은 그 合成的 國家結合을 支配하는 規範에 의해 設定된 權利義務를 갖는다. 全的으로 結合된 경우에는 合成體의 資格은 構成國의 法的活動全般에 影響을 미칠때도 있고 部分的으로 結合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할때도 있으나, 어쨌든 個個의 構成國이 國際法人格을 完全히 喪失하지 않을 程度의 國家結合이고 또한 全體로서의 結合이 典型的 國際法人格者로서의 單一國家와는 어느 面에선가 다른 國家結合을 複合國家라 일컫는 것이다.

複合的인 法的 關係에 의해 생긴 地位가 恒久性과 安定性을 갖고 他國에 의해 承認될 때엔 이른바 主觀的 法的賦性 (qualifications juridiques subjectives) 이란 特殊的인 法的 地位가 形成되는 것이다.

複合된 國家結合은 이를 求心的으로 集約하여 發展強化하면 聯邦이 되고 遠心的으로 分離하여 弱化하면 解散 (分散) 되어 典型的 國際法人格者인 元來의 單一國家로 돌아가게 된다.

國際法上的 複合的統合모델에는 聯合 同君聯合⁴⁴⁾ · 國家聯合⁴⁵⁾ · 聯邦⁴⁶⁾ · 特殊聯合⁴⁷⁾ · 特殊聯邦⁴⁸⁾ 등의 諸類型이 있다.

(1) 聯 合

(가) 同君聯合 (real union, Realunion)이란 2개의 君主적인 主權國이 同一君主를 推戴하고 國際條約인 兩國間의 協定 (Ausgleich)에 의해서 統治權能의 一部 特히 國家元首의 固有의 對外的戰能을 共同히 行使하는 形態의 國家를 말한다. 同君聯合이란 對外的인 目的을 위하여 形成된 複合的인 國際的人格體로서 그 性格은 聯合을 이룬 兩國間의 條約內容에 따라 決定된다. 歷史上의 事例로는 비인會議로부터 1905년까지 繼續된 스웨덴·노르웨이, 1867년부터 1918년까지 繼續된 오스트리아·헝가리, 1918년부터 1940년까지 繼續된 덴마크·아이슬란드間의 聯合等を 들수 있으나 이들은 複合的國家結合의 基本法律關係를 보여주는 原初形態일 뿐 現存例는 없다. 特히 獨逸統一過程에서 追放된 오스트리아가 헝가리와 聯合한 境遇를 보면 兩國은 各各 固有의 法律과 行政機關과 國旗를 갖는 主權國이었으나 Francis Joseph을 共同君主로 했고 外務·財務·陸軍의 3個部署는 兩國의 것을 統合했고, 條約締結, 使節派遣, 宣戰講和는 合成名義로만 可能케 했었다.⁴⁹⁾ 이런 모델은 相互性을 土臺로 한 二元的인 國家形成이고 必要에 따라 對外主權을 強化키 위해 國權的 機能의 一部分을 單一化한 形態인 것이나 어쨌던 그런 限에 있어서는 構成國의 國際人格을 否認했었다.⁵⁰⁾

同君聯合 中에는 2 個 君主國이 各國의 王位繼承法에 의해서 우연히 同一君主를 推戴하되 各 構成國이 獨立된 國際的 人格으로 行動한 1714 年으로부터 1838 年까지의 英國·하노버, 1885 年으로부터 1908 年까지 繼續된 벨기에·콩고같은 例도 있다. 앞에 본 오스트리아와 헝가리國 같은 것은 共同君主가 聯合을 이루는 國家들의 集合的 機關으로 行動하는 이른바 物的인 同君聯合인데 비해, 英國·하노버, 벨기에·콩고 같은 것은 兩國이 別個憲法에 의해서 同一人을 各國王位에 앉게 했으며 한 사람이 同時에 別個國家機關으로 行動토록 했을 뿐인 偶發的이고도 無規約的인 이른바 人的 同君聯合 (Personal Union) 인 것이다. 勿論 이런 人的인 同君聯合에서도 實質的으로는 國家의 政治活動에 彼此間 多大한 影響이 있을 것이 분명하지만 法的으로는 서로 아무런 關係도 없는 것이므로 各 멤버의 國際法人格은 그대로 維持되는 것이다.

(나) 國家聯合 (Confederation, Staatenbund) 이란 多數의 主權國이 共通된 利益의 達成을 위하여 契約 (compact) 에 의해서 結合하고 共同機關에 의해 主權을 共同으로 行使하기도 하는 國家形態를 말한다. 國家聯合의 構成國은 各者의 國際的人格을 維持하나 그 對外的인 權能의 一部를 聯合에 移讓하고도 있으므로 聯合이 存続하는 限 完全한 主權國이 아니라고도 할수 있고 聯合自

体⁵¹⁾ 도 契約된 限度内の 外交能力을 가질 뿐이므로 國際法上的
 完全한 人格主体가 못된다고도 볼수 있는 面이 있다. 聯合構成國
 이 國際法人格을 完全消失하는 것은 아니나 共通된 政治的 利益
 특히 共同安保를 위해 主要한 國家的 活動을 構成國 代表者로 되
 는 社會的이고도 共同的인 機關으로 하여금 行하게 하고, 各構成國
 의 政治的 法律的 活動의 大部分에도 서로 크게 影響을 주는 터
 이므로 第3國도 그들 相互間的 聯合的 契約(約定)을 無視할 수
 없는 것이다. 外交關係의 보다 效率的인 處理를 위해 國家聯合은
 보다 強力한 複合인 聯邦으로 轉化하거나 始初의 單位主權國으로
 갈라서거나 하는 例가 흔하다. 웨스트파리아會議以後 355個의 獨
 立諸侯로 되었던 神聖羅馬諸國의 獨逸, 1778年부터 1787년까지의 美
 國 (南北戰爭時의 南部州聯合은 Confederal States of
 America), 1815年⁵²⁾ 부터 1866년까지의 獨逸(1866年以前의 獨
 逸을 聯邦이라고 하는 것은 無分別한 慣用이다),⁵³⁾ 1291年에서
 부터 1798년까지와 1815年에서부터 1848년까지의 스위스, 1580年에
 서 1795년까지의 네덜란드, 1806年에서부터 1813년까지 라인聯合⁵⁴⁾ 1858
 年의 이탈리아聯合(案)⁵⁵⁾ 1895年에서 1895년까지의 온두라스·엘살바도
 르, 1949年부터 1954년까지의 네덜란드·인도네시아⁵⁶⁾ 등의 實例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모두 聯邦이 되거나 또는 分離될 各個의

獨立國으로 轉移하는 過程에서의 國家形態였다. 따라서 國家聯合의 모델에서는 統合的인 單一國家性을 찾기 힘들고 構成體間의 相互性만이 把握될 수 있을 뿐이다. 57)

(2) 聯 邦

聯合國家 즉 聯邦 (federation, Bunderstaat) 이란 2 個以上の 主權國이 結合하여 單一的인 國際的 人格을 形成하는 複合形態의 國家이다. 複數의 主權國이 支分國으로서 中央政府下에 永久히 結合하고 (聯邦의 形態는 主權分割 形成의 差異로 因해 여러 가지 境遇에 있어 顯著한 差異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하튼 聯邦이란 中央組織自体가 國家로서 統一的인 國際法上的 人格을 認定받은 境遇이다. 聯邦의 支分國 < State, Land, Canton, Province > 과의 關係는 國內法上的 關係이다. 支分國은 單純한 地方團體와 달라 高度의 自主性이 認定되고 있다. 蘇聯構成國은 크게 다르다.) 中央政府만이 構成國의 全領域內에서 最高의 地位를 保持하는 國家形態이다. 聯邦은 國內法인 憲法 (複合文書) 에 의해서 形成되고 中央的인 聯邦政府만이 國際的인 人格을 保有한다.

對外的인 關係는 國家聯合보다 同君聯合과 더욱 恰似하나 聯邦이 同君聯合과 相違한 點은 中央集權化된 強力한 權力을 保有하는

데 있다. 앞서의 國家聯合이 支分國國民에 대해서 直接 權利를 行使할 수 없는데 比해, 聯邦은 보다 集中的 統一的이어서 支分國國民에 對해 直接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⁵⁸⁾ 條約締結權과 宣戰 講和權은 聯邦에 專屬되나 (1778年 美國憲法 第1條·第2條, 1874年 스위스憲法 第2條·第8條, 1949年 獨逸憲法 第32條) 國家에 따라서는 憲法規定에 의한 多少의 對外交際權을 聯邦管理下에 支分國에 容認하는 例도 있다. (1874年 스위스憲法 第9條 1949年 獨逸憲法 第32條) ⁵⁹⁾

相衝하는 것이 아닌 두개의 政治的 忠誠義務 (美合衆國의 市民인 同時에 Ohio州의 市民이고 獨聯邦 <Reich>의 市民인 同時에 Bavaria의 市民이라는 形式의 것) ⁶⁰⁾ 를 지닌 聯邦住民은 共同의 國籍을 保有하며 構成國家間의 戰爭은 內亂으로 取扱된다. 事實 聯邦의 長點은 그것이 不當한 또는 強制的인 中央集權에 의하지 않고도 共同利益의 認定과 實現을 許容한다는 데에 있다.

「보다 完全한 聯合을 形成키 위해서」 < in order to form a perfect union > 各州가 그들의 無制限한 主權을 拋棄했었던 ⁶¹⁾ 1787年 以後의 美國 (1787年 以前의 美國을 聯邦이라고 하는 것은 無分別한 慣用이다) , 1847年 以後의 스위스, 1857年 以後의

멕시코, 1860年以後의 아르헨티나, 1867年以後의 캐나다, 1871年以後의 獨逸, 1891年以後의 브라질, 1893年以後의 베네주엘라, 1901年以後의 오스트레일리아, 1948年以後의 印度 등은 現存하는 主要 聯邦의 事例이다. 聯邦모델의 單一國家性은 單一체 모델의 그것과 같다. ⁶²⁾ 위의 事例中 및 1871年以後 1867年の 北獨聯邦 ⁶³⁾ 은 비록 聯邦의 이름을 쓰고는 있으나 其實 여기에 보는 典型的 聯邦모델일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보는 主張도 있다.

(3) 特殊聯合 (英聯合)

A·A 新生諸國이 統出해 나오기 前까지만 해도 英聯合關係國은 英國의 「所有」 (own) ⁶⁴⁾ 로 되는 大小 60餘個의 植民地와 屬領 (Protectorate, Condominium, Colony & dependency, trust territory, self-governing Colony, federal colony 등) 6, 7 個의 自治領, 약간의 獨立國 그리고 英本國으로 되는 國家集團이면서 全體로서의 英帝國 (British Empire) 의 中核을 이루는 自治領 (Dominions) 들의 特殊한 結合形式이 主要 問題가 되는 國家類型이었다. 특히 兩次大戰을 계기로 한 時代的 變轉이나 英國의 不文慣行에 힘입은 外形과 實質의 微妙한 調整은 오늘의 英聯合

(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에 이르기까지의 英國的인
複合의 意味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대체로 第1次大戦 以前의 英帝國의 自治領 (Dominion) 이란 用
語는 라틴語의 dominium으로 부터 나온 것으로 英國王이 支配하
는 領域一般을 指稱하는 것이었으나 그 植民地中 일찌기 自治가
認定되었던 캐나다가 그의 公式名稱으로 이를 사용한 後 「 広範한
自治 」 를 意味하게 되었다) 은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
서와 같이, 自國旗와 貨幣 및 郵票등을 所有하고, 母國과는 따로
世界郵便同盟에까지 加入한 例도 있었으나, 國際法上으로는 모두 스
튜어트, 하노버王朝以來 英帝國에 歸屬되는 1個 植民地에 不過하였고
전혀 國際的 人格을 認定하지 않음이 通例이었다. 그러나 1893
年에 캐나다가 프랑스와 通商條約을 締結하여 最初로 國際法上的
能力이 認定된 以後 各自治領의 地位는 顯著하게 向上되었으며 특
히 第1次大戦을 계기로 한 大英帝國의 分解 以後로는 그 國際法
上的 能力이 広範하게 認定되어, 現在에 있어서는 모든 自治領이
英本國과 對等한 國際的 地位에 있으면서, 全體로서의 英帝國을 形
成하는 特殊한 存在로 되어 있다.

아일랜드自由國은 1922年에 自治領地位를 認定받고, 翌年 그 資

格에서 國際聯盟加入이 容認되었으며, 1924년에는 워싱턴駐在全權公使의 配置가 許容되었다. 캐나다도 1923년에 워싱턴政府와 漁業條約을 締結하고, 1926년에는 역시 外交使節을 派遣하였다.

這間の 事勢에 따라 새로운 英帝國的 統一体制를 다진 것이 1926년의 발포어宣言 (Balfour Declaration) 이었고 이 宣言에 따라 1931年 12月 11日에 制定된 웨스트민스트憲章 (Statute of Westminster) 이 그들간의 相互關係를 規律했는데 이 무렵에 다듬어진 英國의 形態의 合成規制 中에서 중요한 것을 4개로 추려 볼수 있다.

첫째 발포어宣言을 採択한 1926년의 帝国会議 (Imperial Conference) 는 「 英帝國內의 諸自治體는 共同君主에 대한 忠誠에 의해서 結合되어, 平等한 地位에서 英聯構成員이 된것 」 이라고 하여 英本國과 自治領이 對等한 地位에 있음을 明示했다. 즉 皇帝의 王冠에 대한 共同忠誠 (a common allegiance) 의 誓約을 前提로 한 對等한 立場을 公認하기에 이른 것이다.

둘째 1930年과 1937年의 帝国会議는 英帝國的 構成員이 모두 獨立資格으로 多數當事國間의 條約에 參加할 수 있다고 했는데, 條約締結時에는 英帝國內의 다른諸國에 通告하여 그 條約으로 影響

을 받을 國家의 意向을 申立하게 함으로써 他們간의 利害關係의 調整을 期해야 하는 것으로 했었다.

세계, 1931年의 帝國會議은 自治領과 母國간의 立法限界를 定하여, 自治領이 母國法律을 追從치 않을 수 있는 獨立的인 地位를 認定하였다. 自治領이 制定한 法令은 母國法에 不拘하고 有效하며 自治領內에서 母國法을 廢止할 수도 있고, 장차도 自治領의 同意없는 母國法은 無効化할 수 있다는 등을 明白히 하였다.

네째 1930年의 決定에 따라 和戰(宣戰講和)에 관한 一重要的 政治問題는 英帝國의 全構成國이 相互協議하여 同一步調를 취하게 하였다. 이것은 英聯體制의 一員이 他國과 對戰할 경우에는 英本國을 包含하는 다른 聯合體構成員도 參戰해야 하며, 이 戰爭狀態에서 이른바 自動的 交戰狀態 (Automatic Belligerency)를 受諾치 않고, 中立을 취한다는 것은 英聯體制로부터의 脫退를 意味하게 된다고 하여 英國的 合成形態의 妙點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第2次大戰에서는 非同盟的이고도 個別的인 形式으로 進行되었다).⁶⁵⁾

이상과 같은 事實的이고도 制度的인 進展이 英國의 複合에 參與한 여러 構成員에 인정되어 그 自治性과 獨立性이 提高되는 중에 植民屬領이 自治領이 되고, 自治領은 다시 獨立國이 되되 그들 모

두가 全体로서의 英国的 紐帶를 持續해 가는 모습은 英聯合이 아니고서는 볼수 없는 相關關係요 法律關係인 것이다. 그리고 英本國과 自治領的 英聯合國 그리고 그와는 또 다른 英聯合의 獨立國까지를 合해 오늘의 Commonwealth를 維持해 가는 實質的要領과 共同의感覺속에 特殊合形成態國으로서의 英聯合의 課題가 스며있는 것이다.

「聯合이라는 보다 自由로운 結合 < the freer association > 에로의 轉化」로 된 오늘날의 英聯合의 外延限界나 構成國들의 區劃的인 輪廓은 있는 듯이 없고 없는 듯이 있어 매우 妙하나, 적어도 構成國들이 聯邦의 構成州인 支分國의 部類에 屬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또한 英聯合中에는 名稱만 해도 Commonwealth, Union, Federation等 여러 複合的인 呼稱을 가진 構成國들이 있어왔고 또 이들의 總合을 數없이 많은 英國名으로 妙하게 불러 내려오기도 있는 것이다. ⁶⁶⁾ 眞實로 自由로운 國家의 聯合을 目標로 하는 英國的인 國家類型은 第2次大戰後 亞阿地域의 英領植民地가 獨立함으로써 더욱 進展되었다. 構成體間의 相互性設定에 力點을 둔 이런 모델은 모든 統合型의 長短點을 實利的으로 比較해 낸 折衷型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⁶⁷⁾ 그러나 英聯合自体에는 國際法上 아무런 地位도 認定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ommonwealth는 英本國과 自治領 그리고 보통의 獨立國 등의 3種國으로 構成된다. 그 모든 것이 國際法上의 獨立國이면서도 특수한 結合關係를 갖는 特殊國家集團을 이루고 있다. 自治領의 元首는 英國王 또는 女王이지만, 모든 Commonwealth 國家는 獨立된 國際法人格을 가지며, Commonwealth 國家의 모든 國民은 各其 自國國籍을 享有하나 同時에 같은 Commonwealth 市民의 地位를 保有한다 하고 Commonwealth 市民은 Commonwealth 內에서 다른 一般外國人과는 다른 特別한 処遇를 받는다. Commonwealth 諸國은 Commonwealth 條項이라고 불리우는 特惠規定에 따라 서로 關稅特惠를 누리며, Commonwealth 諸國間에서는 常駐外交使節 대신 그에 相當하는 機關으로 高等辦務官 (High Commissioner)이 交換된다. 이렇듯 Commonwealth 들이룬 英聯合은 여러모로 實益的인⁶⁸⁾ 特殊한 合成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單數의 王冠아래 結集되어 있으면서도 그들 構成國을 結부 짓는 共同機關이나 構成國 國民에게 權力을 갖는 아무런 機關도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自治領民族主義의 進展과 自治領國家의 建立을 도우면서 그들간의 相互依存性을 促求하는 모습은 英聯合이 아니고서는 보기 힘든 例이다.

Commonwealth 가 애당초에는 強制機關을 갖는 有機的 國家인

튜들 (Tudor) 型 Commonwealth 로 提議되었었는데 결국에는 平等한 基督敎的·스토익 (Stoic) 的 假設에 가까운 Commonwealth 를 지향하기에 이른 것이다.

(4) 特殊聯邦 (蘇聯)

蘇聯 즉 오늘의 소비에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 (USSR) 은 15 個社會主義共和國로 構成되는 聯合國이다. 汎슬라브主義的인 對外政策 즉 슬라브主義的인 南進政策은 不凍의 港口와 外海를 얻어내려는 오랜 指標的 施策이었으나, 보스포러스·다아다넬즈 兩海狹의 閉鎖와 遠東·近東·中東·小아시아 및 極東地域에서의 여러 沮喪로 해서 그 進展이 如意치 못한 속에 外政의 失策이 거듭되고 世界政策의 無謀와 國內体制의 無理가 들어나자, 後進的 農業環境이 지너온 原始的 革命성과 부르조아의 無氣力이 마침내는 革命으로 이어져 帝政러시아가 무너지고 몇 교비 變轉 끝에 소비에트聯邦이 서게 되었다.

러시아革命이 大戰의 財戰, 皇帝退位, 부르조아政權, 社會黨과의 聯立政權, 共產政權 등의 여러 過程을 거쳐 이윽고 確立하기에 이른 이른바 프로레타리아政權은 「平和에 관한 宣言」 「러시아 및 東洋의 全勞動者와 回教徒에 대한 宣言」 「對外債務廢棄令」등을 통

해 外國과 外國人에 對한 債務을 否認하고, 外國人의 身體와 財産에 對한 保護를 拒否하고, 蘇聯을 基地로 하는 世界共產革命의 展開를 緊요하게 劃策했으므로 토바르 (Tobar) 的인 正統主義國家들은 勿論이거니와 에스트라다 (Estrada) 的인 事實主義에 따라 革命政府를 承認해 온 國家들 마저 蘇聯革命政府를 外面하다 뒤늦게야 條件附의 承認을 부여하였다. 69)

1936 年에 採択된 소위 스탈린憲法 第15 條는 蘇聯을 構成하는 社會主義共和國들의 主權을 認定하면서도 그 憲法 第14 條에서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聯邦代表權, 條約의 締結批准權, 宣戰講和權, 國防組職과 軍의 指揮權, 聯邦國籍에 관한 立法, 外國貿易 및 外國人의 權利에 관한 立法權 등은 聯邦의 專管事項이므로 聯邦構成共和國들의 그런 主權은 制限된다고 했다. 聯邦의 最高會議 同幹部會 및 閣僚會議와 聯邦部에 의해 다루어 지는 聯邦管掌事項에는 위의 專管事項以外에도 新共和國의 蘇聯加入問題, 國際經濟計劃의 設定問題, 國家安寧의 保持問題 등 國家存立에 必要한 거의 모든 事項이 包含되어 있으므로 聯邦構成共和國의 主權的 管掌事項은 事實상 尠히 重要치 않은 것에만 局限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1944 年 2 月의 改定憲法은 聯邦構成共和國에 對해서, 소위 外交權과 兵備權을 부여 하였다. 이것이 聯邦構成共和國에 對한 廣範

한 自治權의 賦与라고 하는 主張도 있으나 憲法上의 規定(對外關係에 있어서의 一般的指導는 聯邦閣議에서 行하여지고 聯邦의 國防組織과 全武裝力の 統一 및 聯邦構成共和國軍隊의 編成上의 指導要綱의 設定 등은 聯邦管掌事項이다.)으로 미루어 各共和國에 어느 程度의 外交權과 兵備權이 부여 될수 있는가는 크게 疑問視 된다.

憲法上 各 聯邦構成國은 諸外國과 直接關係를 맺고, 이와 協定을 締結하고(條約은 締結할 수 없음) 外交代表와 領事代表를 交換할 權限을 保有한다고 했으나 聯邦全體에 대한 外交權, 各共和國과 外國과의 相互關係에 관한 全般的 手續權이 聯邦에 있고 이와 저축되지 않는 限에 있어서만 構成共和國의 外交的 權限이 制限的으로 認定된다고 했다. 실제에 있어서는 各 構成共和國에 外相이 任命되고 우크라이나와 白러시아가 講和條約에 調印하고 國際聯合에 加入한 정도이며, 修正憲法條文은 우크라이나와 白러시아에 있어서 조차 完全히 實施되지 않고 있고 다른 聯邦構成國에서는 전혀 實施되지 않고 있는 實情이다. 兵備權만해도 各 共和國이 各自의 軍隊를 獨自的으로 保有한 實例는 全無한 것이다.

蘇聯憲法 第77條에는 「全聯邦的 省」, 第78條에는 「聯邦的 共和國的 省」이 明示되어 있다. 前者는 委任받은 國家行爲部門을 聯邦全域에 걸쳐 聯邦機構만이 全的으로 行하는 機構이고, 後者는

委任 받은 國家行為部門을 聯邦構成共和國의 同名의 省을 통해 行하는 機構 (蘇聯最高會議 幹部會에 의해 定해진 企業은 除外)라고 해서 特殊한 國家(政府)形態를 보이고 있는 것도 奇異한 點이다.

1918年 以後의 蘇聯은 民族을 單位로 하면서도 一黨制原理(말 크스레닌主義, 前衛黨的指導性에 의한 一黨制 시스템), 分派結成禁止, 制度的肅清下的 Bolshevism的인 指導政治의 原則으로 해서 民族의 自決은 形式化되고 實質的으로는 強力한 社會主義에 의해 中央集權的으로 指導되고 있는 特異한 聯邦이다.

이처럼 소비에트聯邦이란 合成國家는 蘇聯共產黨을 原動機로 하고 大衆團體를 傳導벨트로 活用하며 소비에트 (Soviet)란 러시아語는 會議라거나 評議會라는 뜻인데 이 말이 勞働者大議員會議로 使用된 것은 1905年의 第1次革命때 부터이다.)를 作業機構로 여기는 特殊形態여서, 通常的인 國家聯合도 아니고 典型的인 聯邦도 아닌 特例的 複合이라고 볼수가 있다.

모든 聯邦構成國들이 聯邦에 從屬되어 獨立性이 희박하므로 보통 聯邦도 아니고 英聯合과도 다른 形態이면서 또한 우크라이나와 白러시아 두 共和國만이 國際聯合에 加入해 있는 등의 畸型을 보여 주고도 있다. 革命러시아가 承認을 받지 못해 國際聯盟에 參加하

지 못하다가 承認을 받은 後 1934 年에야 뒤늦게 加入했으나 핀
란드와의 紛爭을 國際聯盟規約 第12 條에 따라 聯盟에 부탁하라는
決議를 無視해 聯盟에서 追放된 일이나 國際聯合을 拒否權一辺倒로
이끌어간 事例도 蘇聯形態가 지닌 特例라고 해 들수 있다.

四. 南北聯邦制案에 대한 批判(綜合比較)

이제 以上에서 詳論한 바를 別表에서 처럼 一覽的으로 總括하여 結論해 보자.

元來의 複數國이 보다 큰 「單一體모델」을 이루는 境遇의 2個事例, 複數國이 모였으되 名稱이나 實質이 單一的만이 아니어서 複合體모델을 이루는 境遇의 3種(同君型 聯合型 聯邦型) 10個事例, 分斷國들이 오늘의 法的地位나 앞날의 統一形態를 想念 表出한 것인 「分斷體모델」 4個事例등 16個의 類型을 縱示했고, 그 모든 모델의 法的性格 즉 國際法的 國家人格의 모습을 보는 國家的 「基本性」, 統合的 「單一國家性」, 支分的 個體間的 「構成體相互性」을 橫示 하였다.

大觀하면 「單一體모델」이란 畢竟 單一國을 이루어낸 것이므로 새로운 「單一國家性」이 뚜렷한데 비해 「複合體모델」의 同君型이나 聯合型은 時間的으로나 空間的으로 또는 名稱이나 實質에 있어 尙今 또는 企圖的으로 單一國이 아니라서 「單一國家性」이 흐린 만큼이나 構成體相互性이 留意되고 있고 또 그런만큼은 「基本性」의 試鍊面이나 否定性이 나타나 있다. 「複合體모델」의 聯

邦型은 「單一國家性」과 「構成體相互性」을 妙하게 調節했으며 「單一國家性」面에 더욱 力點을 둔것을 그 「基本性」에서 읽을 수 있다. 「分斷體모델」들은 當面的 課題와 永久的課題를 안고 있어 要項記号에 餘힘이 있으나 共產的 企圖下의 聯邦的 共和國를 내세우는 NK型만은 매우 特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分斷體모델을 보면 BRD型은 獨逸帝國 (German Reich)과 BRD를 同一한 것으로 본 初期同一性論을 調整하여 아직은 組織機構와 行政能力을 갖추지 못한 實體로서의 「獨逸內의 國家」 (State in Germany) 라는 解理에 그 基本的 立場을 둔것이고 DDR型은 內獨的 特殊關係를 拒否하고 國際的 正常關係가 可能한 兩國論을 堅持하지만 그렇다고 BRD의 部分國家論의 論擲에 相反되는 것이라고 主張할 程度로 公式的인 言質까지는 내세우지 않을 聯合論的인 立場인 것이다.⁷⁰⁾ BRD型과 DDR型間의 課題는 BRD型이 國家的 單一性을 讓步하여 東獨의 國家的 地位를 認定하되 이같은 東獨國家性的 認定은 國際法上的 普遍的인 國家承認을 自動的으로 誘導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西獨에 의한 東獨의 國際法的承認을 意味하지도 않는다고 한데 대해 DDR型은 東獨을 國際法的으로 承認해야 옳다고 抗辯하고 있는 데에서 그 代表的

모습을 엿볼수 있다.⁷¹⁾ 東方政策의 表現인 BRD型이 從來의 國家的 單一性에 變化를 보인데 比하면 DDR型은 비록 國家聯合的인 民族的 協議體를 留意한다고는 했으나 아직은 매우 模糊하고도 인색한 變化인 것이다.

ROK型은 Hallstein原則이 變質⁷²⁾ 된 뒤 和解的인 多元秩序에 適合을 맞춘것으로 長期分斷의 現實을 統一에 妨害가 되지 않을 範圍에서 可能的 限 特別關係形式으로 留意해 가며 直視對峙해 가겠다는 것이고 NK型은 革命戰略論에 따라 徹頭徹尾 共產主義로 武裝된 論脈인 것이다. ROK型과 NK型間의 問題의 하나는 ROK型이 BRD型처럼 國家的 單一性을 讓步하여 「6.23 宣言」을 낸데 대해 單一國號나 聯邦制나 해서 共產的인 國家的 單一性을 내세운데에 있다. 그것이 共產主義的인 戰略戰術의 하나임은 이미 指摘한바 있거니와 또 다른 現實論이나 法理論으로 미루어 본다 할지라도 그러한 南北聯邦制案의 發想에는 몇가지 混論이 스며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첫째 「基本性」全般을 보자 ROK型은 BRD型과 그 모습이 같으나 NK型은 BRD型과는 전혀 그 모습이 다르다. 애당초 NK型은 DDR型과 함께 國家繼承事由인 分割이나 分裂의 類型과

그 外形이 類似한 것이나⁷³⁾ 「單一國號」의 「聯邦制」니를
 내세워 共産的 複合體를 바라는 境遇 그 國家的 單一性이 二國
 的인 DDR型과도 또 다른 內容이 되는 것이고 結局 그것은 「單
 一體모델」 또는 單一性이 強한 「複合體모델」의 基本性과 같아
 지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獨逸의 歷史上 200年 以
 上에 걸쳐 分裂的 聯合으로 지내온 터라 聯邦的 또는 聯合的 共
 存에 있어 高度의 免疫을 지녔다고 볼수있는 BRD型이나 DDR型
 이고 보면 單一의 歷史뿐인 韓國의 処地에서 NK型이 하루아침에
 國家形態로서의 聯邦制를 내세우는 것은 無謀가 아니면 또 다른
 底意와의 聯関으로 볼수밖에 없는 것이다. 百步를 讓步해서 南北
 聯邦制案이 過渡的 措置라할 境遇 그토록 오랜 聯邦的 聯合的인 共
 存 經驗國인 獨逸에 있어서조차도 오늘의 모습을 過渡的인 分裂
 로 믿으려 애쓸 것이면서도 「構成體相互性」의 모습에 힘쓰고
 「單一國家性」을 뒤밀어 둔 記號를 보면 NK型이 當場이라도 期
 待하려는 「單一國家性」의 모습—그것은 아마도 「單一體모델」 또
 는 單一性이 強한 「複合體모델」의 것과 같은것이 分明하다—은
 너무나 큰 距離가 있음을 짐작해 볼수 있다.

· 둘째로 「基本性」中的 「國家的單一性」과 「對外的 人格性」을

보자 「6.23 宣言」은 南北韓이 國際機構에 同時的 兩立的으로 參加해도 無妨하다는 外交政策을 말한것이 있는데 南北聯邦制案은 그에 대한 對抗的인 要件이나 方式이면서도 「單一國號」로 되는 聯邦制國家를 이루어서 UN에 加入하는 式으로 外交的 UN加入 問題에 內政的難題인 國家形態를 걸물려 놓은 것이다. 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모든 分斷體가 오늘의 實相처럼 對外的인 人格性을 兩立的으로 누릴것인즉 國際機構에의 參與도 兩立的인 것으로 하기 위해 一旦 國家的單一性을 暫時 뒤밀어 두려는 것이 BRD型 DDR型과 같은 ROK型인 것이나 NK型은 國家的單一性을 暫時라도 뒤밀 수는 없어 單一國號의 南北聯邦制로 先統一한後 UN에 參與하는 것이다. 未來的인 統一論議로서 聯邦·聯合論爭이나 憲法論爭을 하되 分斷體대로 兩立的으로 나란히 UN에 加入한 BRD型 DDR型이 오늘의 分斷體 自體內部를 聯邦이니 聯合이니 하는 式으로 運營하는 것을 어찌 錯覺한 것이 아닌가도 싶고, 또한 聯邦이니 聯合이니 하는 모델들의 「基本性」이 지니는 多樣性과 聯邦·聯合이 지니는 共存的 複合的語義를 무슨 目的的 意識的인 統一的語彙로 混用하려는 作戲가 아닌가도 싶어진다. UN 新規 加入條件의 하나인 「平和愛好國」이란⁷⁴⁾ 「聯邦制國家」라는

뜻도 아니고 分断体들도 兩立的으로 UN에 加入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이 分断体대로라도 UN에 加入하겠다고 提案했던 往時の 意味나, 비록 專門機關에서 나마 UN에 共히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UN을 繼續 誹謗 外面하는 処地이고 보면 UN 加入問題를 빌어 聯邦制國家形態를 말하는 뜻은 自明해지는 것이다.

셋째로 「構成体の 相互性」을 보자. BRD型和 DDR型이 分断的 現実下에서 그들간의 法的關係에 있어서만은 더러 異見이 있으되, 서로의 境界를 認定하고 不可侵과 相互的 平等關係를 約定하고 相互共同的인 調節關係를 이어가고 있음은 表에서 보는바와 같다. ROK型이 BRD型和 같은 政策을 보여주고 있으나 NK型은 分断体모델의 어느것과도 다르고 또한 聯邦制를 내세우면서도 어느 複合(聯邦·聯合)類型에도 未達이고 또 否定的인것이 NK型의 實相인 것이다.

모든 複合(聯邦·聯合)類型이 「相互境界」 「相互不可侵」 그리고 「相互平等」的인 共存을 認定하나 이를 全面的으로 拒否하고 있고 「相互共同機關」이나 「相互法律關係」도 目的的인 底意가 있어 뜻이 다른지라 NK型은 全体的으로 보아 併合型같은 「單一體

모델]이나 北獨聯邦이나 蘇聯邦型같이 單一성이 강한 複合體 모델의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보여진다. 南北限界線이라는 것이 軍事的分割占領線이나⁷⁵⁾ 休戰協定에 의한 軍事的 休戰線이어서 危險指數 높은 衛生遮斷線일 것이면서도 普通의 境界意識보다 흔들려있고 NK型은 甞체 地上·地下로 이 境界를 無視하고 있는 實情이다. BRD型과 DDR型에서는 「基本性」의 엄함이 있 으되 「構成體相互性」에서는 그 나름의 調節에 있어 앞으로의 「單一國家性」도 獨逸의 모습으로 想定해 볼 수 있을것 같다. 그러나 ROK型과 NK型에서는 아직 그렇지가 않다.

ROK型 NK型에서 처럼 「基本性」과 「構成體相互性」에 있어 서의 基本的課題가 두루 크게 엄혀있는 限 統一問題나 UN問題를 위한 暫定的인 前提가 南北聯邦制案이어야 하는가는 尙今 未可必이 요 統一韓國이 지날 「單一國家性」의 內容도 아직은 未指數이다. 平和統一을 위한 前提나 原則은 우선 「相互性」의 方法論이어야 할것인데 NK型은 政策도 法理도 모두가 붉은 「單一性」의 目的論으로 이어져 있다.

註

- (1) 英国 國際紛争研究所 (ISC) 首席研究員 David Rees 의 集計 ((時事, 1976年 5月, PP. 84-90)
- (2) 金相浹, “美·中共接近과 韓國統一問題”, 知性, 第1卷 第1号 (1971. 11) PP. 10-23; 스칼라피노, “激變하는 世界속의 美国”, 世代, 55 (6), PP. 124-130.
- (3) 李瑣根, 韓國史 (現代篇), 1963, PP. 796-776; 拙稿 “國際法上의 分合모델과 分断·統一모델의 比較類型的考察”, 大韓國國際法学会論叢, 第20卷 1.2合併号, 1975年 12月, PP. 108. 1.17-121.
- (4) 徐極性, “金日成의 祖国統一 5大綱領批判的 考察”, 統一政策 第2卷 第2号, PP. 84-86.
- (5) 北韓 “정부비망록”, 조선중앙년감, 1970, PP. 521-527.
- (6) 平壤 中央放送解説, 1973年 9月 14日 12:25.
- (7) 勞動新聞, 1973年 7月 23日. 3面.
- (8) 平壤 中央放送論說, 1973年 7月 5日 11:35.
- (9) 핀란드 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金日成의 대

- 담 (1969. 9. 2), 조선중앙년감, 1970. PP. 35-37.
- (10) Ibid.
- (11) 平壤中央放送論說, 1973年 7月 5日 11:35.
- (12) 平壤중앙방송대담, “南北聯邦制 實現의 重要성과 意義에 대하여” 1972年 12月 18日 16:20.
- (13) 北韓 政治辭典의 “聯邦制 國家” 1973. PP. 313-314.
- (14) Ibid.
- (15) Ibid.
- (16) 朝鮮말辭典의 「聯邦制」, 1961, (徐極性 前掲論文 <P.85> 에 서 再引用)
- (17) 北朝鮮研究 (日本國際關係 共同研究所刊), No. 34. 1977. P. 23.
- (18) 別表 「分断体모델」 參照.
- (19) 拙稿 op. cit. PP. 117-122.
- (20) 拙著, 國際法 蝨雪出版社, 1976, P. 78-79.
- (21) 東西獨의 例.
- (22) 이라크·요르단聯合, 蘇聯邦등의 例.
- (23) 拙稿, “複合制의 國際的인 法人格”, 大韓國際法學會論叢 (第 10卷 第1号), 1965年 3月. PP. 5-11.

- (24) L. B. Orfield and E. D. Re (ed),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1956, PP. 617-9 (Note on Cold War).
- (25) D. P. O'Connell, International Law, 1965, PP. 508-511;
H. Kraus, The Statu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he Eastern Territories of Germany, 1963, PP. 9-17; Oppenheim-Lauterpacht, International Law, II, PP. 602-605;
朴在滸, 國際法, P. 142; 横田喜三郎, “無条件降服과 国体”, 國際法外交雜誌 (第45卷 第1,2合併号), 1945, PP. 1-18.
- (26) 拙稿, “Hallstein 原則과 分断国의 法入格”, 大韓國際法学会論叢 (第17卷 第2号), 1972, PP. 36-39.
- (27) Staatsverlag der DDR, Sicherheit und friedliche Zusammenarbeit in Europa, 1968.
- (28) 그具体的内容은 尙未確定이다.
- (29) 마틴크릴레 (Martin Kriele) 教授의 「分断独逸의 法的狀況에 관한 15 命題」(梁森植訳), 統一政策, 1975, PP. 281-282.
- (30) 拙稿, op. cit., PP. 39-41.
- (31) Statement by Nam IL at the Geneva Conference, 22 May 5 June 1954. (国防部 政訓局, 제네바 政治会谈 演說集, 1955,

PP. 415, 505, 513, 554.)

- (32)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第4期 第8次 全員會議 決議 「祖國
統一 위업을 實現하기 위하여 革命力量을 百方으로 強化하자」
(1964年 2月 27日).
- (33) 拙稿, “國際法上的 分合모델과 分斷·統一모델의 比較類型的考
察” P. 121.
- (34) 別表參照.
- (35) O'Connell, op. cit., P. 501.
- (36) Ibid, PP. 501-502.
- (37) 李植根, 前掲書. PP. 972-976.
- (38) Oppenheim-Lanterpacht, op. cit. PP. 156, 549.
- (39) H. Kelse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1952, PP. 75-76
214 Brierly-Waldock, The Law of Nations, PP. 175-173.
- (40) 註 47 參照.
- (41) 拙稿, 歐美外交史講論要義.
- (42) Republic Aviation Corporation v. Lowe (Annual Digest
and Report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Cases, 1946,
Nr. 19).
- (43) 別表 「單-體모델」 參照.

- (44) 拙著, 國際法, P. 102.
- (45) Ibid, . PP. 103-105.
- (46) Ibid, PP. 106-107.
- (47) Ibid, PP. 107-114.
- (48) Ibid. PP. 115-119.
- (49) Oppenheim-Lanherpacht, op. cit. PP. 172-173; 拙著,
op. cit. P. 102.
- (50) 別表 同君聯合型参照.
- (51) 拙著, op. cit. PP. 103-105.
- (52) Brierly 는 이해를 1820年으로 적고 있다 (Brierly
Waldock, op. cit. P. 128).
- (53) Brierly-Waldock, op. cit. p. 128; Fenuick, Internat-
ional Law, PP. 120-121.
- (54) Brierly-Waldock, op. cit. PP. 173-174.
- (55) 19世紀後半의 이탈리아統一이 이탈리아半島에 있는 '獨立國들
의 結合으로된 合併的新國인가 사르데냐王國이 取한 併合的 披
領인가에 관해서는 여러 國際法的인 論議가 있으나 그것이
外勢驅逐과 內勢糾合을 웨친 이탈리아의 모든 民族主義者들에

의한 民族統一 (Brierly-Waldock, The Law of Nations, P. 151.) 運動의 슬기로운 結果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탈리아 統一의 여러 過程에서 外交的·軍事的으로 莫大한 影響을 준 隣接大國 프랑스가 이탈리아의 統一形態가 「教皇을 名義上의 大統領으로 하는」 (under the honorary Presidency of the Pope) 「이탈리아聯合」 (Italian Confederation) 이게 하려던 企圖秘匿은 吟味해 들만 하다. 라마티누宣言 (1848. 3. 5) 이 비인 條約 (1815. 6. 9) 的 領土境界의 修正을 聲明한것은 비인會議가 故意的인 牽弘策으로 롱바르디아를 오스트리아에 割與한데 대한 프랑스의 抵抗이었고, 노바라 (Novara) 會戰直後 프랑스會議가 사르데냐王國 保全을 保障키 위한 이탈리아 一部占領의 必要性을 決議 (1849. 3. 30) 한 것이나 그 해 여름의 프랑스遠征軍에 의한 로마武力強占은 모두 카톨릭教徒의 投票와 僧侶勢力으로 해서 大統領에 就任한 루이·나폴레옹이 教皇 絶對權者 (Ultramontanism) 의 同情이 要緊했던 自家的 政治事由 때문이었다. 這間 이탈리아의 民族主義的 愛國者들에 好意와 同情을 보여온 나폴레옹이 브롱비에르 (Plombières Interview, 1858. 7. 21) 에서의 密約이나 對 오스트리아宣戰布告에서

「알프스山脈에서 아드리아海邊에 이르는 사르데냐 拓領」을 約定해 준것은 이탈리아 民族統一의 大業을 돕는듯한 好意的인 대목이었다. 그러나 뽀롱비에르密約에서 「Italian Confederation」의 形成과 사보이, 니스의 割讓을 強要한것 그리고 모처럼의 솔페리노戰勝 (Battle of Solferino 1859, 6, 24) 을 스스로 单独講和로 마무리 버리고 條約 (Preliminary Treaty of Villafranca, 1859, 7. 11) 에서 베네치아를 오스트리아 隸下에 두되 教皇을 元首로 하는 「Italian Confederation」의 一部」로 하고 모데나, 터스카니等 오스트리아系 兩君主를 復權케 하려던 것들은 이탈리아의 民族統一을 毀破하려는 惡意的인 대목이었다.

陸接大國인 프랑스의 介入 또는 影響下에 聯合的인 複合體로서의 이탈리아를 이룰수 없다고 해서 奮然蹶起爭取한 것이 이탈리아의 民族統一的인 nation building 이고 보면 外勢影響下의 錯雜模糊한 「聯合的」 過程이 正面으로 拒否된 國家統一의 한例로 볼수가 있다 (拙著, 國際法, P. 166; R. R. Palmer, A History of modern world. PP. 524-9).

(56) Brierly-Waldock, op. cit. PP. 174.

(57) 別表 「複合體 모델」 國家聯合型 參照.

- (58) Brierly-Waldock, op. cit. P. 175.
- (59) Fenwick, op. cit. P. 122; Oppenheim-Lauterpacht, op. cit. PP. 175-176 §89.
- (60) MacIver, The Modern state, P. 358.
- (61) MacIver, The Web of Government, P. 392.
- (62) 別表参照.
- (63) 1867年에서 1870년에 이르는 사이의 北部独逸「聯邦」

(Norddeutscher Bund)은 마인江 以北 21 邦을 結合한 것이었는데 同君聯合 같기도 하고 國家聯合 같기도 하나 實은 帝政下에 놓인 独逸國 (das Deutsche Reich) 바로 그것이 었다. 普魯西亞王이 盟主의 地位에서 聯邦의長이 되어 「國際法上의 代表權能資格」 (die völkerrechtliche Vertretungsbefugnis) 을 갖고 聯邦名義로 對外權을 行使할 수 있는 그런 國家體制였다. 宣戰講和, 外交, 陸·海軍指揮, 商業交通, 關稅, 金融, 衛生, 民刑法制定 등의 廣範한 聯邦支配權을 普魯西亞王이 掌握專担했고, 普魯西亞的 리더십을 象徵하듯 聯邦軍과 聯邦旗도 普魯西亞的 모델로 再現改造 되었다. 議會는 上院 (Bundesrat) 과 下院 (Reichstag) 을 두는 兩院制를

취했으나 이것도 모두 프러시아의 特性이 강한 모습이 있다.
各邦에서 온 大使・公使로된 上院에서는 43 席中 17 席을 프러시아가 차지했고 다음으로 4 席을 차지하는 색소니를 빼면 나머지는 모두가 個別的인 弱小国들의 集合이었다. 理論上으로는 餘他邦들이 團結만하면 프러시아를 票數로 이길수도 있는 構造였으나 其實은 모든 餘他邦의 票도 프러시아에 加勢토록 工作되어 있어 實際로 主要題에 있어 프러시아에의 對抗勢가 이루어진일은 전혀 없다. 下院은 人口比例에 따라 10 萬名單位로 選出된 297 名으로 構成되었으나 이역시 그 5 分之 4 가 프러시아出身 이어서 實際에 있어서는 投票도 없는 그저 與論逃避策 (escape valve for public opinion) 이나 宰相用的 書記 (The Chancellor's Clerk) 格일 따름이었다. 統獨完了後 1871 年에 시작된 第 2 帝政下의 새로운 獨逸帝國은 알사스 로렌, 바이에른, 바덴, 뷔템베르크, 헤세달무슈타트等 마인江南北 5 邦을 더한 26 邦으로 이루어 졌다. 各邦代表로 되는 聯邦參議院과 普通選舉로 되는 帝國議會를 두었으나 그國制上地位는 매우 虛弱한 것으로 프러시아의 王과 宰相이 지닌 全權은 議會에 대해서도 전혀 任責치 않는 絶對的인 것이어서 프러시아의

指導性은 더없이 強化된 모습이였다.

비스마르크가 簡單하고 값싸게 成就한 (brief, cheap, successful) 세 차례의 獨立戰爭의 結果 차지한 全獨領 $\frac{3}{4}$ 의 굳게 다
져진 再編相인 것이다.

(64) MacIver, The Modern State, P. 287.

(65) A. B. Keith, The Dominions as Sovereign States. 1938,

PP. 46-48; E. C. S. Wade & G. Godfrey Phillips, Constitutional Law, PP. 476-477; Oppenheim-Lauterpacht, op. cit.

P. 207.

(66) 拙稿, 複合制의 國際的인 法人格, PP. 21-23.

(67) 別表 複合체 모델 英聯邦型.

(68) 拙著, 國際法, PP. 115.

(69) Ibid. PP. 117-119.

(70) Kriele, op. cit. P. 282.

(71) Ibid. PP. 282-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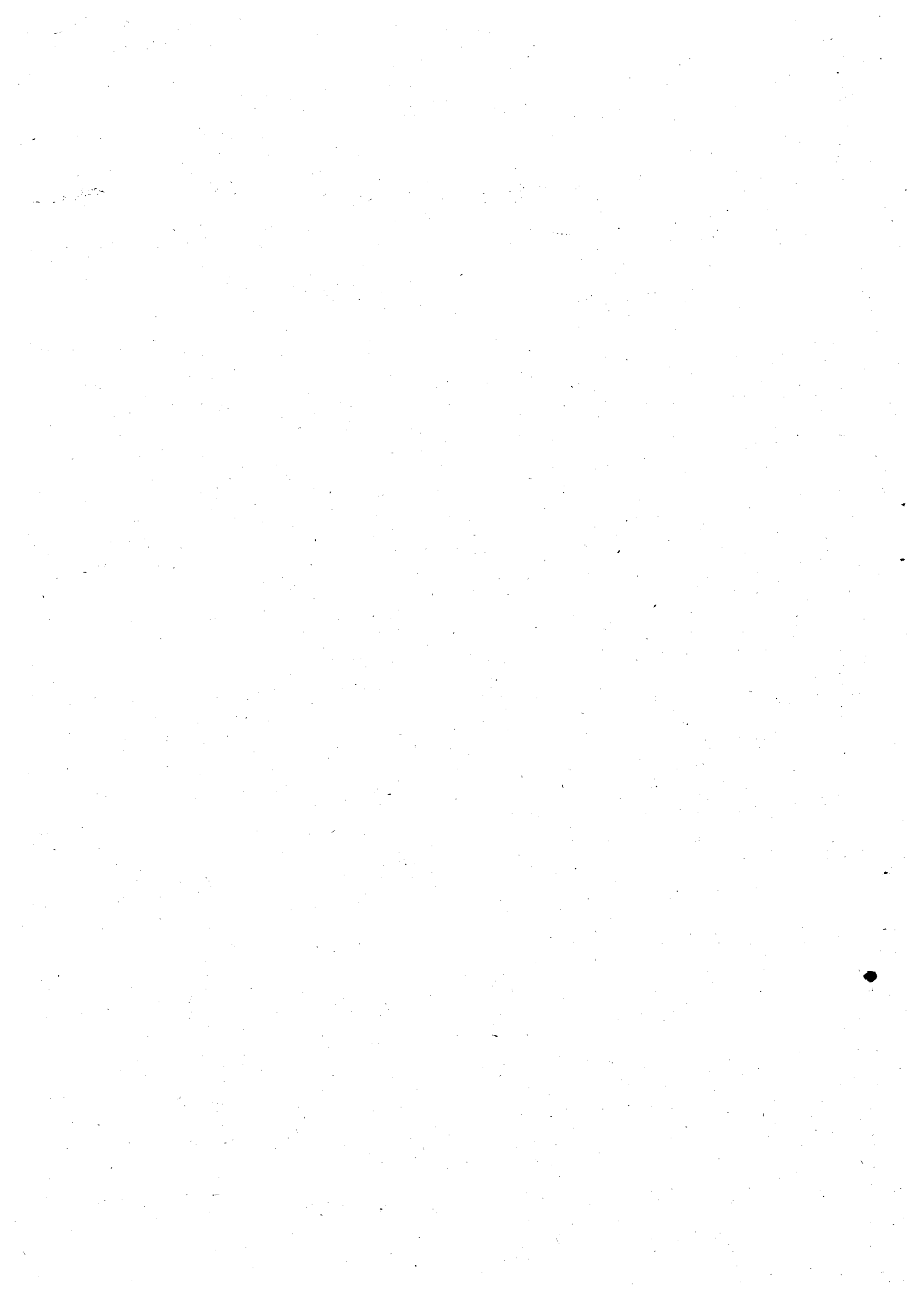
(72) 拙稿, Hallstein原則과 分断國의 法人格, PP. 36-41.

(73) 別表參照.

(74) 拙著, 國際法, PP. 190-1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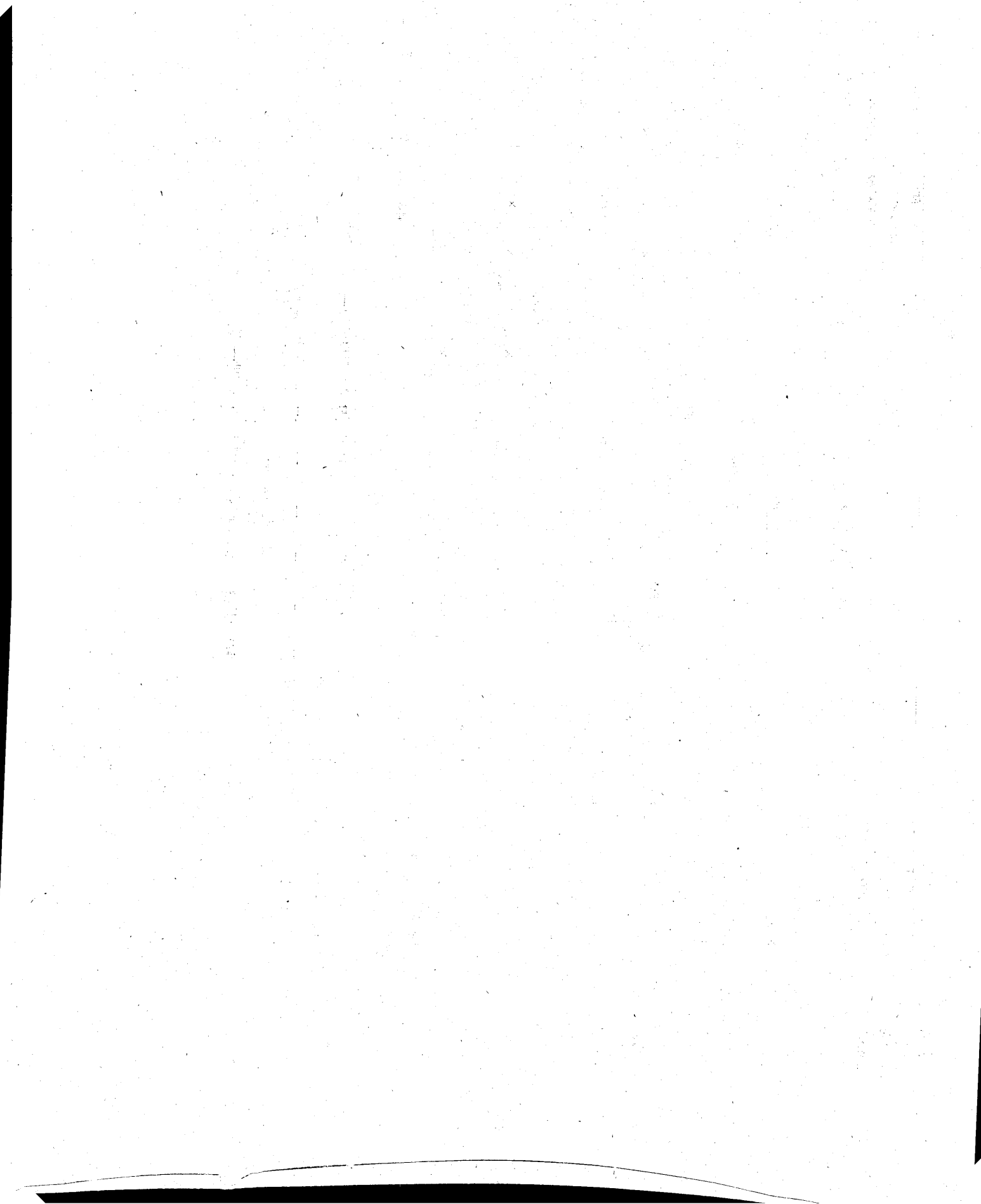
(75) 李用熙，三八線劃定新攻，露城 李瑄根博士 華甲紀念論叢

(亞細亞學報 第一輯)，1965. PP. 409-460.



單一體·複合體·分斷體의 統合 모델

| 性格 모델 | 基本性 | | | | 單一國家性 | | | | 構成體相互性 | | | | | | | | | | |
|--|---------------|-------------|------------|-------------------|----------|----------|----------------------|----------|-------------------|--------------|---------|----------------|-------------------------|--------------------|-----------------|-----------------|----------------|---|---|
| | 法統的領域的 繼續性 | 領域的 統一性 | 國家的 單一性 | 構成體 對外的 人格性 | 單一 元首 | 單一 國籍 | 單一 宣戰 和 條約權 | 單一 使節 | 單一 集 機 關 | 單一 國 旗 | 相互 境 | 相互 不可侵 過 | 相互 平等 併 過 程 | 相互 共同 機 關 | 相互 國內法 關係 | 相互 國際法 關係 | 相互 特殊 關係 | | |
| 單一體 모델 | 併 合 型 | 併合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合 併 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複 合 體 모델 | 人的同君聯合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58年 이탈리아聯合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58年 이라크·요르단聯合型 個別的 反Arab 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性 格 모 델 | 基 本 性 | | | | 单 一 国 家 性 | | | | 構 成 体 相 互 性 | | | | | | | | | |
|--------------------------|-------|-----|-----|-----|-----------|----|-----|-----|-------------|----|----|----|-----|----|----|----|----|----|
| | 法統的 | 領域的 | 國家的 | 構成體 | 單一 | 單一 | 單一 | 單一 | 相互 | 相互 | 相互 | 相互 | 相互 | 相互 | | | | |
| | 繼續性 | 統一性 | 單一性 | 對外的 | 元首 | 國籍 | 單一戰 | 條約權 | 使節 | 集權 | 國旗 | 國境 | 不可侵 | 平等 | 共同 | 國內 | 國際 | 特殊 |
| 英 聯 合 型 | X | X | X | ○ | ○ | ○ | X | X | X | X | X | ○ | ○ | ○ | X | X | X | ○ |
| 聯 合 國 家 (聯 邦) 型 | X | ○ | ○ | X | ○ | ○ | ○ | ○ | ○ | ○ | ○ | X | ○ | ○ | ○ | ○ | X | X |
| 1867年 北 獨 聯 邦 型 | ○ | ○ | ○ | X | ○ | ○ | ○ | ○ | ○ | ○ | ○ | X | ○ | ○ | ○ | ○ | X | X |
| 蘇 聯 邦 型 | X | ○ | ○ | X | ○ | ○ | ○ | ○ | ○ | ○ | ○ | X | ○ | ○ | ○ | ○ | X | X |
| B R D 型 (部 分 國 家 論) | ○ | ○ | X | ○ | X | ○ | X | X | X | X | X | ○ | ○ | ○ | ○ | X | X | ○ |
| D D R 型 (修 正 二 國 論) | X | X | X | ○ | X | X | X | X | X | X | X | ○ | ○ | ○ | ○ | X | ○ | X |
| R O K 型 (正 統 性 論) | ○ | ○ | X | ○ | | | | | | | | ○ | ○ | ○ | ○ | X | ○ | ○ |
| N K 型 (革 命 戰 略 論) | X | X | ○ | ○ | | | | | | | | X | X | X | X | ○ | X | X |

單一體 모 델은 그 一般의 類型을 過程的으로 본 것이 고
複合體 모 델은 그 生存形態를 歷史的으로 본 것이 고
分析體 모 델은 그 對應形式을 事實的으로 본 것이 임

